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2020. 9

2020. 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2020. 9

#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문예영 배화여자대학교 교수

2020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유 찬



# 요 약

## 1. 연구개요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sup>1)</sup> 제도는 2017. 12. 19. 신설되었으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납세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임
  - 정책대상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벤처기업 출자자
  - 적용요건: ①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 ②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할 것
  - 면제한도: 출자자 1명당 최대 2억원
  
- 벤처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산업이나, 그만큼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따른 위험을 분담해 주기 위해 도입되었음
  -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큰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실패 비용을 줄이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함
  
- 본 연구는 제도의 적용기한 종료(2020. 12. 31.)전 조세지출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제도 개선방안 및 일몰연장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고,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관련하여 체납금액이 높은 세목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순임
  - 2017~2019년 체납금액 대비 지정금액 비율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가장 높았으며(74.7~84.9%), 지정금액 대비 수납금액이 제일 높은 세목 역시 부가가치세였음(4.1~7.5%)

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2019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과점주주의 경우 지정된 금액은 1조 4천억원, 수납금액은 827.9억원이므로 수납률은 5.86%에 불과함
  - 무한책임사원의 경우 지정된 금액은 61.5억원, 수납금액은 18백만원으로 수납률은 2.92%임
  - 2017~2019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9년 수납금액은 2018년 대비 275억원이 감소하였음
  - 대다수 벤처기업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표 1〉 징수연도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납부할 세액	체납세액	원납세자 납부금액	출자자 지정금액	출자자 수납금액	
과점주주	2017	2,319,589	2,045,563	489,706	1,412,055	82,786
	2018	2,519,717	2,162,349	496,931	1,568,087	87,563
	2019	2,491,722	2,085,214	320,834	1,618,792	60,059
무한책임사원	2017	4,633	6,825	486	6,156	18
	2018	4,152	2,608	745	4,666	847
	2019	1,762	1,700	252	1,918	19

자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 2019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현황을 납세자를 기준으로 평균하면 제2차 납세의무 지정된 금액은 86.04백만원, 수납금액은 5.04백만원으로 관찰됨
  - 3개년 평균 납세자별 체납횟수는 6.25~7.47회였으며, 업력은 3.98~4.15년이었으며, 과점주주는 1.06~1.21명(개)이었음
  - 2019년 기준 납세자 평균 매출액은 24.8억원, 납부할 세액은 1.3억원, 체납세액은 1.05억원 및 원납세자 납부금액은 16.2백만원임

〈표 2〉 징수연도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현황: 납세자별 평균금액

(단위: 회, 년, 개(명), 백만원)

구분	체납 횟수	업력	출자자의 수	매출액	납부할 세액	체납 세액	원납세자 납부금액	출자자 지정금액	수납 금액
2017	6.25	3.98	1.21	2,725.54	141.34	124.65	29.84	86.04	5.04
2018	6.80	4.02	1.06	2,432.95	134.54	115.46	26.53	83.73	4.68
2019	7.47	4.15	1.06	2,482.27	126.00	105.44	16.22	81.86	3.04

주: 납세자를 기준으로 매출액, 납부할 세액, 체납세액, 납부금액, 지정금액 및 수납금액의 평균값을 구한 값임

자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 2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납세자별 과점주주 지정금액 최대금액은 2017년 739.5억원, 2018년 563.5억원, 2019년 357.0억원임

## 2. 분석내용 및 결과

- 우리나라와 같이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매우 드문 편이므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와 같은 특례제도는 찾아보기 어려움

〈표 3〉 주요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및 과세특례제도

구분	일본	독일	미국
제2차 납세의무 존재 여부	○	○	○
근거법률	「국세징수법」 제33조~제38조	「조세기본법(AO)」 제69조~제75조	「내국세입법(IRC)」 제6901조
제2차 납세의무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li> <li>-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회피 등 고의성으로 인한 제3자 의무위반인 경우</li> <li>- 제3자 의무위반이 아닌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의 양도가 무상/불충분한 대가로 이루어진 경우</li> <li>- 수탁자가 연방세보다 우선권이 없는 채무를 먼저 변제한 경우</li> </ul>
제2차 납세의무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한책임사원 및 청산인</li> <li>- 동족회사 출자자</li> <li>- 공동사업자</li> <li>- 수익귀속 법률상 귀속자</li> <li>-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재산명의인</li> <li>- 무상양수인 및 사업양수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대리인(고의, 중과실 또는 탈세가담자)</li> <li>- 탈세자 또는 조세장물범</li> <li>- 계좌진실성 위반자</li> <li>- 연결납세의 자회사</li> <li>- 사업양수인 및 물건소유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양수인 및 수탁자</li> </ul>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존재	×	×	×
조세회피 및 귀책사유 고려	×	○ (일부 예외)	○

주: 일본-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청산인, 법률상 귀속자, 사업양수인, 무상양수인,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재산명의인, 독일- 제3자 의무위반이 아닌 경우: 사업양수인 및 물건소유자  
 자료: 전병욱, 「중소기업 실패기업인의 제2차 납세의무 완화방안 연구」, 『세무와 회계연구』, 2019, pp. 161~175  
 토대로 저자 작성

- 일본의 경우, 유사한 납세의무제도가 있으나, 동족회사 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부과된 국세의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본 연구의 정책대상자는 창업 초창기의 벤처기업으로 창업자가 단독으로 창업하고 기술평가 보증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며, 첨단제조업의 소규모 기업에 해당
  - 창업초기 벤처기업 생존율은 78.4%(5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현 제도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정책홍보 및 안내 등 적극적 세무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일반적으로 창업초기 벤처기업은 매출액이 낮고 법인세 및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로 체납되는 세목은 부가세 및 원천세 등일 확률이 높음
  - 이들 기업은 세무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소기업의 경우, 직권 폐업이 대다수이며, 체납독촉 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안내가 고지될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동 특례제도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고지 시 동 특례제도를 같이 고지하는 행정안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실패비용을 줄이고, 제도전 기회를 제공하여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적용요건 완화 등의 제도개선과 정책홍보가 필요함
  - 적용요건: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 기준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 인증 시 기업의 기술력 및 성장성에 대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별도 적용요건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함<sup>2)</sup>
  - 적용한도액: 제2차 납세의무 평균 수납액이 1,2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현 특례제도의 한도(1인당 2억원)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정책홍보: 벤처기업 폐업 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를 고지할 때, 동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안내도 수반될 필요가 있음

2) 한국벤처투자(주)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과 심층면담결과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기 매우 어렵고 증빙자료를 구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 동 특례제도의 정책대상인 창업초기 벤처기업은 매출액 및 세무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직권 폐업의 경우가 대다수일 것으로 판단됨<sup>3)</sup>
  - 이 경우 체납독촉 후에야 제2차 납세의무가 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동 과세특례제도에 대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음
- 타 제도와 중복성: 동 과세특례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실패기업의 재창업 재정 지원제도인 ‘벤처패자부활제’가 2005년부터 도입되었고, 이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운영 중임
-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자금지원(보조금), 자금투자, 자금융자, 보증지원, 교육 및 상담, 컨설팅, 멘토링, 자산매매, 사무공간 제공, 법인신용카드 발급, 자동차 리스, 클라우드 펀딩 및 성실경영평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세제지원으로는 국세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등이 있음
  - 다만, 담당기관이 매우 다양하므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운영은 어려운 편임
- 쉬운 재도전 환경 조성: 다각적인 재도전 저해요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력의 창업 기회와 재도전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하기 때문에 (재)창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는 필수적임
- 성실실패<sup>4)</sup>에도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1달 이내 검증, 경영이외 이중처벌 금지 등)하고 재창업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자 공제제도(압류가 불가하도록 공제금지급권리의 양도·압류·담보제공 불가 명시) 운영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세수입규모에 근거하여 동 특례제도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를 최대치로 추정한 결과, 향후에도 동 특례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됨
- 분석에는 일반기업 수 대비 벤처기업 수 비중,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금액(14.39%) 및 징수실적(19.56%)의 5개년 평균 증가율 자료가 활용되었음

3) 과점주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동 특례제도의 인지도는 매우 낮았음(알고 있다: 23.7%, 모른다: 76.3%)

4)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은 기업 중 동일업종 평균 매출액 및 사업소득 임금근로자의 중위소득 미달 등 주요 지표로 판단 장려하기 위한 정책목적의 갖고 있으므로 다른 재창업 정책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함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세수입규모는 법인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금융소득세 및 기타 간접세 등을 포함한 전체 징수실적이므로 본 연구의 대상범위보다 넓음
- 따라서 동 특례적용요건의 소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비중, 법인세 및 부가되는 세금 등,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한 배제규정을 제외하고 추정한 금액이므로 세수효과 추정의 최대치라고 볼 수 있음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 인원 및 금액의 5년 평균 증가율은 각 6.94% 및 14.39%, 징수실적의 5년 평균 증가율은 19.56%임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 대비 징수실적 비중의 5년 평균값은 4.76%임
- 2015~2016년 지정금액 및 징수실적의 증감률은 매우 편차가 심한 편이나 징수실적의 규모는 400억~800억원의 범위 내에서 편차가 있음

〈표 4〉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징수실적 금액

(단위: 명, 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지정인원 및 금액	19,737	10,066	23,879	15,044	21,707	14,183	24,254	15,682	25,256	16,192	23,774	15,275
증가율			20.99	49.45	-9.10	-5.72	11.73	10.57	4.13	3.25	6.94	14.39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징수실적 및 비중	437	4.34	863	5.74	598	4.22	866	5.52	577	3.56	726	4.76
증가율			97.48		-30.71		44.82		-33.37		19.56	

주: 1. 증가율은 (당해년도 - 전년도)/전년도 × 100으로 계산

2. 징수실적 비중은 징수실적/지정금액 × 100으로 계산

3. 평균은 5개년 증가율 및 비중의 평균값임

자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 2018년 기준, 가동기업 수는 816.4천개이며, 벤처기업 수는 36.8천개이며, 전체 가동기업 수 대비 벤처기업 수 비중은 4.51%임
- 2010~2018년 9개년 평균 가동기업 수는 633천개이며, 평균 벤처기업 수는 31천개로 평균 벤처기업 수 비중은 4.88%임

5) 벤처기업 수는 『국세통계연보』상 별도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동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

- 2010년 대비 2019년 가동기업 수는 348.97천개가 증가하였으며, 벤처기업 수는 12.2천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5> 가동기업 수 대비 벤처기업 비중

(단위: 천개,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가동기업 수	467.40	499.60	538.13	576.14	623.41	673.37	726.70	769.68	816.37	632.31
벤처기업 수	24.60	26.10	28.20	29.10	29.90	31.30	33.40	35.30	36.80	30.52
벤처기업 비중	5.26	5.22	5.24	5.05	4.80	4.65	4.60	4.59	4.51	4.88

주: 1. 벤처기업 비중은 벤처기업/가동기업 수 × 100으로 계산

2. 평균은 9개년 기업 수 및 비중의 평균값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 2020~2022년 3개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금액은 35.43억~46.41 억원이며, 3개년 평균 면제금액은 40.8억원임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 및 징수실적은 일정비율로 증가하지 않으므로, 5개년 평균금액을 2020년 기준으로 산정하되 3개년만 추정하였음
  - 현행기준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추정된 조세지출규모(연평균 40.8억원)보다 훨씬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적용요건: ① 법인세 세목 ② 벤처기업 ③ 매출액 대비 연구비 비중 5% 이상 ④ 소기업 ⑤ 「조세범처벌법」 등의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표 6>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세수효과 추정: 기업 수 비중

(단위: 억원, %)

연도	2020	2021	2022	합계	평균
지정금액	15,275	17,473	19,987	52,735	17,579
징수실적	726	831	951	2,508	836
면제금액	35.43	40.55	46.41	122.39	40.80

주: 1. 지정금액: 2015~2019년 5개년 평균금액을 2020년 금액으로 기준하여 평균증가율 14.39%를 적용하여 계산

2. 징수금액: 2015~2019년 5개년 평균금액을 2020년 금액으로 기준하여 지정금액 대비 비중 4.76%를 적용하여 계산

3. 면제금액: 징수실적 × 4.88% 비중을 곱한 값임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및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 3. 결론 및 정책시사점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세 등의 징수확보를 위하여 유용하고 편리한 제도이나, 본래의 납세의무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제3자에게 납부책임을 확장시키므로 사법상의 거래안전을 해치고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제2차 납세의무가 신규 자금조달 전략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동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정책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가 신규 자금조달 전략 또는 주주의 지분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59.7%)됨
  -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전, 동 특례제도의 적용대상이 선량한 관리의무를 위반 및 해태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형법 및 민법상 제도가 완비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법인에 대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미흡한 편으로 판단됨<sup>6)</sup>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인은 변제우선순위 중 국세 등의 조세채무 변제순위를 후순위로 선택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함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면제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 전 기업이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다가 불가피하게 폐업한 것에 대한 사회적 신뢰 형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의 악의적인 도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현장실사를 통한 지표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 미국과 중국의 기업인의 실패경험은 평균 2.8회인 반면, 우리나라 창업인의 실패경험은 평균 1.3회로 나타남

6) 국세공무원, 세무사 및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결과, 최대주주 등이 법인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동일시하는 인식이 아직까지 팽배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과점주주 기업을 대상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를 알고 있는지 파악한 결과, 벤처기업의 34.2%,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56.5%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과점주주인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세법 규정에 대한 인지수준을 파악한 결과, 23.7%만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76.3%는 모른다고 응답함
  - 과점주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가 폐지된다면, 신규 자금조달 전략 또는 주주의 지분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세법규정이 영향을 미칠지 질문한 결과 63.2%가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36.8%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 즉, 벤처 확인 후 벤처확인우대제도로 알려져 있는 「조특법」 제6조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나 일반적인 「국기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최근 도입된 「조특법」 제15조에 의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관찰됨
  
- 앞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 정책대상자: 동 특례제도의 정책대상자가 되는 벤처기업은 창업초창기의 기술 기반의 소규모 기업으로 창업자가 대표이사과 동일하며, 법인세 부담이 매우 낮음
  - 제2차 납세의무 비인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직권폐업에 의한 제2차 납부통지서를 받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증빙자료 및 장부가 비치가 안 되어 있는 편임
  - 법인세 세목: 동 특례제도는 법인세 세목에 한해서 적용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벤처기업은 법인세 감면규정이 있고, 창업초창기에는 수익이 미미하므로 법인세가 발생할 여지가 적음
  
- 정책적 활용도가 낮은 동 과세특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용요건 완화가 필요함

7) 벤처인 웹사이트에서 벤처확인우대제도로 소개되고 있으며, Q&A의 유형에서도 잦은 질문에 의한 답변이 공개되어 있음

- 법인세 세목: 창업초창기의 벤처기업은 이익창출이 미미하고, 이익이 창출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특법」 제6조에 의해 법인세 50~75%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 체납액 면제에 대한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음
  - 현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창업초창기의 벤처기업이 체납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일 확률이 높음
  - 동 특례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동 특례제도가 적용되는 체납세목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간접세 및 원천세는 엄밀히 기업부담분이 아니므로 특례를 적용하는 세목 확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
- 연구개발비 비중요건: 벤처기업 인증 시 기업의 기술력 및 성장성에 대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연구개발비 별도 요건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벤처기업 인증은 벤처유형에 따라 각 기준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한 예로 연구개발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연구개발비 규모, 사업성 평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창업초창기 벤처기업의 폐업은 일정기간 세무신고 누락 시 직권폐업이 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고지되는 것이며, 과점주주 입장에서 장부 및 증빙자료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기 때문임
- 소기업 요건: 소기업 요건을 삭제하면 창업초창기 벤처기업 이외에도 동 특례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폐업 직전 창업초창기 벤처기업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세무행정처리가 미흡하여 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서식작성 및 증빙자료를 구비하기 어렵기 때문임
- 세무행정: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고지 시 동 특례제도에 대한 고지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기법」 제39조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동 특례제도에 대한 인식 역시 매우 부족한 편임
  - 상대적으로 「조특법」 제6조에 의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는 벤처확인우대제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편임

# 목 차

I. 서론	17
II.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	21
1.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23
2.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	24
3.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현황	26
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현황	26
나.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현황	32
III. 선행연구 및 국제 비교	33
1. 선행연구	35
2. 주요국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37
IV. 타당성 평가	39
1.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의 정책대상	41
가. 벤처기업 확인유형	41
나. 벤처기업의 창업방식	43
다. 벤처기업의 지분구조	46
라. 벤처기업의 매출액 규모	46
마.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	48
바. 과점주주 벤처기업의 특성분석 결과	49
2. 벤처기업의 재창업 지원제도	50
가. 벤처기업 생존율 현황	50
나. 벤처기업 재창업 지원제도	54

다. 벤처기업 창업 및 재창업관련 조세지원제도 .....	58
3. 타당성 분석 .....	60
<b>V. 효과성 평가 .....</b>	<b>63</b>
1.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분석 .....	65
가. 세수효과 추정을 위한 가정 .....	65
나. 세수효과 추정 .....	66
2. 설문조사를 통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기업의 특성 분석 .....	74
가. 조사 설계 .....	74
나. 조사 내용 .....	75
다. 응답기업 특성 .....	76
라. 설문조사 결과 .....	76
3. 과점주주 벤처기업의 특성 및 효과성 분석 .....	105
가.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한 벤처기업의 특성 .....	105
나.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 효율성 분석 .....	108
<b>VI. 결론 .....</b>	<b>113</b>
<b>참고문헌 .....</b>	<b>120</b>
<b>부 록 .....</b>	<b>123</b>

## 표 목 차

<표 II-1>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면제 대상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 예 ...	25
<표 II-2> 징수연도별 제2차 납세의무 구분 .....	26
<표 II-3> 징수연도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현황 .....	27
<표 II-4> 징수연도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현황: 납세자별 평균금액 ...	27
<표 II-5> 징수연도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현황: 체납횟수별 평균금액 ...	28
<표 II-6> 세목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현황 및 징수실적 .....	29
<표 II-7>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현황: 총금액 .....	30
<표 II-8>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현황: 평균금액 .....	31
<표 III-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	36
<표 III-2> 주요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및 과세특례제도 .....	38
<표 IV-1> 벤처기업 확인유형 분포 .....	42
<표 IV-2> 창업자의 과거 창업 경험 및 결과 .....	44
<표 IV-3> 벤처기업 지분구조 현황 .....	45
<표 IV-4> 2018년 벤처기업 경영성과 현황 .....	47
<표 IV-5> 2018년 벤처기업 투자현황 .....	48
<표 IV-6> 벤처기업 기술평가 유형 .....	49
<표 IV-7> 지역별 중소기업 부도법인 수 .....	51
<표 IV-8> 벤처기업 연차별 평균 생존 .....	53
<표 IV-9> 2019년 재도전 지원제도 개요 .....	55
<표 V-1>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징수실적 금액 .....	67
<표 V-2> 가동기업 수 대비 벤처기업 비중 .....	68
<표 V-3>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세수효과 추정 .....	68
<표 V-4> 전체기업의 매출액 추이 .....	69

<표 V-5> 벤처기업 매출액 추이 .....	70
<표 V-6> 전체기업 매출액 대비 벤처기업 매출액 비중 .....	70
<표 V-7>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세수효과 추정 .....	71
<표 V-8>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징수실적 금액: 법인세 .....	72
<표 V-9>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세수효과 추정: 과점주주 및 법인세 .....	73
<표 V-10>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세수효과 추정: 「조특법」 제6조 반영 .....	73
<표 V-11> 설문 조사 설계 개요 .....	74
<표 V-12> 조사 세부 항목 .....	75
<표 V-13> 응답기업 특성 .....	76
<표 V-14> 창업자 학력 .....	77
<표 V-15> 과거 창업 경험: 벤처기업 .....	78
<표 V-16> 단독 및 공동작업 형태(벤처기업) .....	79
<표 V-17> 창업 당시 및 현재의 목표시장 .....	80
<표 V-18> 기업 경영체제(벤처기업) .....	81
<표 V-19> 주주별 지분율(벤처기업) .....	82
<표 V-20> 최대주주 및 과점주주 여부(종합) .....	83
<표 V-21> 벤처기업의 과점주주 이유 .....	83
<표 V-22>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과점주주 비해당 이유 .....	83
<표 V-23>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과점주주 비해당으로 인한 어려움 .....	84
<표 V-24> 최대주주 및 과점주주 여부(벤처기업) .....	84
<표 V-25> 최대주주 유형(벤처기업) .....	85
<표 V-26> 특수관계 주주 유형(벤처기업) .....	86
<표 V-27> 재무상태 현황 .....	86
<표 V-28> 손익계산 현황 .....	87
<표 V-29> 정부 정책지원 수혜 현황 .....	87
<표 V-30> 신규 자금조달 방법 및 비율 .....	88
<표 V-31> 국내 및 세계 기술력 비교 .....	89
<표 V-32> 글로벌 경쟁력 .....	89

<표 V-33> 장기적 성장 전망성 .....	90
<표 V-34> 벤처투자기업 대상 정책지원제도 인지도(종합) .....	91
<표 V-35> 벤처투자기업 대상 정책지원제도 인지비율(벤처기업) .....	91
<표 V-36> 벤처 및 중소기업 대상 조세지원제도 인지비율(종합) .....	92
<표 V-37> 벤처 및 중소기업 대상 조세지원제도 인지비율(벤처기업) .....	93
<표 V-38> 벤처기업 대상 정책지원 수혜 경험 .....	94
<표 II-39> 경영의사결정에서의 세법규정 및 조세지원제도 고려 수준 .....	95
<표 V-40> 경영의사결정에서의 세법규정 고려 수준(벤처기업) .....	95
<표 V-4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인지도(종합) .....	96
<표 V-4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인지도(벤처기업) .....	97
<표 V-4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신규 자금조달 전략 및 주주 지분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대기업 및 중소기업) .....	98
<표 V-44>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폐업 및 재창업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대기업 및 중소기업) .....	99
<표 III-45>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경영전략 및 출구전략 방해 여부 (대기업 및 중소기업) .....	100
<표 V-46>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로 인한 투자 확대 예상 (대기업 및 중소기업) .....	101
<표 V-47>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 인식도(벤처기업) .....	102
<표 V-48>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요건 완화 필요성(벤처기업) .....	103
<표 V-49>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신규 자금조달 전략 및 주주 지분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벤처기업) .....	104
<표 V-50>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폐업 및 재창업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벤처기업) .....	105

## 그림 목 차

[그림 V-1] 기업 경영체제 .....	80
[그림 V-2] 주주별 지분율 .....	82
[그림 V-3] 벤처투자기업 대상 정책지원제도 인지비율 .....	90
[그림 V-4] 벤처 및 중소기업 대상 조세지원제도 인지비율 .....	92
[그림 V-5] 벤처기업 대상 정책지원 수혜 경험 .....	94
[그림 V-6]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인지도 .....	96
[그림 V-7]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 인식도 .....	102

# I. 서론





## I. 서론

- 재창업기업은 신생 창업에 비해 성공률이 높고 생존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도전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제도의 2016년 수혜기업의 2년차 생존율은 86.7%로, 이는 신생기업 2년차 생존율(50.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됨(2015년 수혜기업의 2년차 생존율 약 91.2%, 3년차 생존율 약 80.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지원 사업의 2016년 수혜기업의 2년차 생존율은 83.0%, 창업지원사업의 2015년 수혜기업의 2년차 생존율은 77.6%로 나타남<sup>8)</sup>
  
- 특히, 신성장 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중요한 산업이지만, 그만큼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따른 위험을 분담해 주기 위한 취지로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를 도입하였음
  - 노동연구원(2019)<sup>9)</sup>에 따르면, 2014~2017년간 벤처인증기업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8.26%로 이는 대기업(8.55%)과 대등한 규모로 고용성장률에 상당한 기여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남
    - 동 기간 벤처인증기업의 고용 증가분은 10만 3,640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고용증가분(13만 6,319명)의 76% 규모이며, 300인 이상 대기업(34만 4,317명)의 30% 수준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큰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실패비용을 줄이고,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은 이들의 재기를 더욱 어렵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함
  
- 과세특례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신성장 서비스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벤처기업의 법인세 등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신성장 벤처기업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임

8) 김선화(2019).

9) 한국노동연구원(2019. 5)

-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성장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신성장 산업은 장기간·대규모 투자 및 고위험이 수반되므로 고위험 신성장 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할 필요가 있음
  - 신성장 벤처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고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다는 점에서 과세특례가 입법화될 경우, 벤처기업 창업 증가를 통한 고용 확대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함
- 동 제도는 2017년 12월 19일 신설되어 2018. 1. 1~202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적용기한 종료 전 조세지출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제도 개선방향 및 일몰연장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에 동 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여 동 제도를 통한 조세감면액 범위를 추정하였음
    - 벤처기업별 제2차 납세의무 발생 여부, 면제금액 등의 파악이 어려워 제도를 통한 벤처기업의 법인세 감면액 추정이 곤란한 상황이지만,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예상 감면액 범위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도변경 시 적정한 수준 및 개선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Ⅱ.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





## II.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

### 1.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sup>10)</sup>

-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중 일정한 자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 합병회사 사원 및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sup>11)</sup> 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이들 무한책임사원은 당연히 제2차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것임
  - 이에 반하여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사실상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음
  
- 과점주주란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의미<sup>12)</sup>
  -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에는 직접소유는 물론 간접소유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함
    - 이 요건에 해당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보며,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음<sup>13)</sup>

10) 황남석,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설」, 삼일아이닷컴(www.samili.com), 검색일자: 2020. 4. 5.

11) 「상법」 제212조, 제269조

1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7821 판결 등

1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

- 지배적인 영향력을 언제 행사하는지 살펴보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①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②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임
  -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①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②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로 구분 가능
  
-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란 청산인 등의 제2차 납부의무에서와 동일하다는 의미이며,
  - 판례는 법인이 사업양수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때에는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도 법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해당함<sup>14)</sup>
  
- 주된 납세자인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됨
  - 제2차 납부의무자는 법인이 납부할 세액 중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무한책임사원은 부족액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과점주주는 부족한 금액에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지게 됨

## 2.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sup>15)</sup> 제도는 2017. 12. 19. 신설되었으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납세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임

14)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0210 판결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참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가의 조세채권 보전 및 조세징수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의 출자자임

\* 무한책임사원: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원

\*\* 과점주주: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과반수(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 동 제도의 정책 대상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벤처기업 출자자로 ①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이어야 하고 ②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여 산정된 규모 이내인 기업을 뜻함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배제됨

- 벤처기업·출자자 중 ① 직전 3년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을 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 경우 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②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벤처기업 중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표 II -1>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면제 대상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 예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평균 매출액 등)
로봇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의료기기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프로그래밍 및 SW개발업 등	50억원 이하
엔지니어링업 등	30억원 이하

자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3.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현황

#### 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현황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2017~2019년 징수연도를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과점주주 비중이 무한책임사원의 비중보다 매우 높은 편임
  - 2019년 기준으로 2차 납세의무자는 과점주주가 21,026명인 반면, 무한책임사원은 27명임
    - 우리나라의 기업 중 합자회사 및 합명회사 형태의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임
  - 2019년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의 원납세자는 19,776개(명) 기업이며, 이 중 과점주주는 21,026명임

<표 II -2> 징수연도별 제2차 납세의무 구분

(단위: 개(명), 백만원)

구분	과점주주			무한책임사원		
	원납세자	제2차 납세의무자	금액	원납세자	제2차 납세의무자	금액
2017	16,411	19,879	82,786	14	20	18
2018	18,728	19,883	87,562	19	20	847
2019	19,776	21,026	60,058	20	27	19

자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 2019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과점주주의 경우 지정된 금액은 1조 6천억원, 수납금액은 600.6억원으로 수납률은 3.71%에 불과함
  - 무한책임사원의 경우 지정된 금액은 61.5억원, 수납금액은 18백만원으로 수납률은 2.92%임
  - 2017~2019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9년 수납금액은 2018년 대비 275억원이 감소하였음
  - 대다수 벤처기업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표 II -3> 징수연도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납부할 세액	체납세액	원납세자 납부금액	출자자 지정금액	출자자 수납금액
과점주주	2017	2,319,589	2,045,563	489,706	1,412,055	82,786
	2018	2,519,717	2,162,349	496,931	1,568,087	87,563
	2019	2,491,722	2,085,214	320,834	1,618,792	60,059
무한책임사원	2017	4,633	6,825	486	6,156	18
	2018	4,152	2,608	745	4,666	847
	2019	1,762	1,700	252	1,918	19

자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 2019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현황을 납세자를 기준으로 평균하면 제2차 납세의무 지정된 금액은 81.86백만원, 수납금액은 3.04백만원임
  - 3개년 평균 납세자별 체납횟수는 6.25~7.47회였으며, 업력은 3.98~4.15년이며, 과점주주는 1.06~1.21명(개)임
  - 2019년 기준 납세자 평균 매출액은 24.8억원, 납부할 세액은 1.3억원, 체납세액은 1.05억원 및 원납세자 납부금액은 16.2백만원임
  - 납세자별 과점주주 지정금액 최대금액은 2017년 739.5억원, 2018년 563.5억원, 2019년 357.0억원임

<표 II -4> 징수연도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현황: 납세자별 평균금액

(단위: 회, 개(명), 백만원)

구분	체납 횟수	업력	출자자의 수	매출액	납부할 세액	체납 세액	원납세자 납부금액	출자자 지정금액	수납 금액
2017	6.25	3.98	1.21	2,725.54	141.34	124.65	29.84	86.04	5.04
2018	6.80	4.02	1.06	2,432.95	134.54	115.46	26.53	83.73	4.68
2019	7.47	4.15	1.06	2,482.27	126.00	105.44	16.22	81.86	3.04

주: 납세자를 기준으로 매출액, 납부할 세액, 체납세액, 납부금액, 지정금액 및 수납금액의 평균값을 구한 값임

자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 2019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현황을 체납횟수를 기준으로 평균하면 제2차 납세의무 지정된 금액은 19.61백만원, 수납금액은 60만원임
  - 2019년 기준 체납횟수 1회당 납부할 세액은 24.85백만원, 체납세액은 20.72백만원 및 원납세자 납부금액은 3.15백만원임
  - 체납횟수별로 구분한 경우 지정금액 최대금액은 2019년 103.0억원, 2018년 430.8억원, 2017년 417.3억원임

<표 II -5> 징수연도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현황: 체납횟수별 평균금액  
(단위: 개(명), 백만원)

구분	매출액	납부할 세액	체납 세액	원납세자 납부금액	출자자 지정금액	수납 금액
2017	2,725.54	27.66	24.21	5.47	20.61	1.09
2018	2,432.95	25.95	21.75	5.17	20.56	1.05
2019	2,482.27	24.85	20.72	3.15	19.61	0.60

주: 체납횟수를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 체납세액, 납부금액, 지정금액 및 수납금액의 평균값을 구한 값임  
자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관련하여 체납금액이 높은 세목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순임(<표 II-6> 참조)
  - 2017~2019년 체납금액 대비 지정금액 비율은 세목별로 부가가치세가 가장 높았으며(74.7~84.9%), 지정금액 대비 수납금액이 제일 높은 세목 역시 부가가치세였음(4.1~7.5%)
- 또한,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현황을 수입금액 귀속연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법인의 체납금액, 출자자의 지정금액 및 미수납금액이 가장 큰 연도는 2016년으로 조사됨(<표 II-7> 참조)

〈표 II -6〉 세목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현황 및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세목	체납금액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 (체납금액 대비 비중)						수납금액 (지정금액 대비 비중)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법인세	804,995	828,167	771,731	542,016	(67.3)	543,111	(65.6)	546,620	(70.8)	20,315	(3.7)	26,986	(5.0)	17,376	(3.2)
부가 가치세	983,024	1,076,391	1,110,819	734,409	(74.7)	913,643	(84.9)	921,576	(83.0)	55,417	(7.5)	54,038	(5.9)	37,760	(4.1)
기타 간접세	4,948	12,992	22,718	3,420	(69.1)	7,915	(60.9)	10,314	(45.4)	27	(0.8)	131	(1.7)	202	(2.0)
원천세	247,392	237,477	176,836	129,317	(52.3)	99,544	(41.9)	137,800	(77.9)	6,730	(5.2)	6,187	(6.2)	4,616	(3.3)
기타	5,145	6,192	3,691	2,842	(55.2)	3,570	(57.7)	2,774	(75.2)	278	(9.8)	221	(6.2)	98	(3.5)
계	2,045,634	2,162,472	2,085,993	1,412,083	(69.0)	1,568,182	(72.5)	1,619,202	(77.6)	82,786	(5.9)	87,563	(5.6)	60,059	(3.7)

주: 1. ( ) 안은 비중임

1) 기타간접세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주세 및 인지세 세목금액의 합계금액, 원천세는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금융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등의 합계금액, 기타에는 종합부동산세 및 증여세의 합계금액임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분석

〈표 II - 7〉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현황: 총금액

(단위: 천원)

구속 연도	법인수	수입금액	납부할 세액	채납금액	원납세자 납부액	채납횟수	출자자 지정금액	미수납금액	순수납액
2010	2	0	2,994,059	165,207	0	7	1,112,956	154,351	0
2011	5	60,000	1,448,549	1,713,504	12,084	11	542,559	606,879	0
2012	29	114,940,422	9,857,522	13,702,169	65,196	181	9,351,854	12,370,753	12,305
2013	3,784	104,031,647,363	711,658,305	658,089,344	110,393,754	24,982	380,646,449	372,796,142	18,910,211
2014	6,788	194,522,601,651	1,004,513,580	944,071,498	160,951,446	51,132	648,149,502	615,654,584	35,520,179
2015	9,858	267,087,664,026	1,378,664,154	1,176,817,985	248,637,639	84,566	839,635,123	740,183,702	54,257,104
2016	9,618	250,359,866,567	1,511,991,043	1,190,060,592	363,393,678	88,841	951,938,090	776,490,283	58,417,950
2017	8,111	196,750,787,251	1,449,735,150	1,154,603,950	283,004,570	73,139	799,562,716	609,646,397	39,711,015
2018	4,746	86,884,025,671	639,016,393	480,298,238	132,386,384	37,217	476,301,759	384,850,759	16,587,080
2019	13	296,000,541	3,324,345	2,685,332	779,877	36	3,048,374	2,656,534	2,612
- <sup>1)</sup>	4,970	0	618,785,905	671,891,786	7,862,460	17,544	489,178,487	495,232,982	6,988,808
계	47,924	1,100,047,593,493	7,331,989,004	6,294,099,605	1,307,487,087	377,656	4,599,467,867	4,010,643,366	230,407,263

주: 1) 원자료는 국세청 내부자료로서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일자를 기준으로 2017~2019년 3개년 자료이며, 해당 부분은 수입금액 귀속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현황자료임

자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분석

- 일반적으로 1개의 기업이 평균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1.5억원, 체납금액은 1.3억원, 원납세자가 납부한 금액은 2.7천만원으로 나타났음
- 또한, 기업이 1회의 체납 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는 금액은 평균 1.2천만원, 미수납금액은 1천만원 및 순수납액은 61만원으로 나타났음

<표 II -8>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현황: 평균금액

(단위: 천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납부할 세액	체납금액	원납세자 납부액	지정금액	미수납 금액	순수납액
2010	0	1,497,029	82,603	0	158,994	22,050	0
2011	12,000	289,710	342,701	2,417	49,324	55,171	0
2012	3,963,463	339,915	472,489	2,248	51,668	68,347	68
2013	27,492,507	188,070	173,914	29,174	15,237	14,923	757
2014	28,656,836	147,984	139,079	23,711	12,676	12,040	695
2015	27,093,494	139,852	119,377	25,222	9,929	8,753	642
2016	26,030,346	157,204	123,733	37,783	10,715	8,740	658
2017	24,257,279	178,737	142,350	34,891	10,932	8,335	543
2018	18,306,790	134,643	101,201	27,894	12,798	10,341	446
2019	22,769,272	255,719	206,564	59,991	84,677	73,793	73
- <sup>1)</sup>	0	124,504	135,189	1,582	27,883	28,228	398
계	22,954,002	152,992	131,335	27,283	12,179	10,620	610

주: 1. 수입금액, 납부할 세액, 체납금액 및 원납세자납부액은 원납세자 수로 평균한 금액이며, 지정금액, 미수납금액 및 순수납액은 체납횟수로 평균한 금액

1) 원자료는 국세청 내부자료로서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일자를 기준으로 2017~2019년 3개년 자료이며, 해당부분은 수입금액 귀속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현황 자료임  
자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분석

- 귀속연도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현황 중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인원 및 금액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출자자 중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한 징수실적은 지정현황 대비 3.56%에 해당함

#### 나.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현황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와 관련하여 2020년 3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특례를 신청한 벤처기업 출자자는 없음

### Ⅲ. 선행연구 및 국제 비교





### Ⅲ. 선행연구 및 국제 비교

#### 1. 선행연구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며, 이는 최근에 도입된 특례규정이기 때문임
  - 벤처기업에 대한 자료 및 연구가 활발한 편은 아니나, 최근 정부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중소기업연구원 중심으로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고 있음
    - 벤처기업 조세지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거의 드문 편임
  - 김희선(2019)은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2010년 벤처확인을 받은 벤처출신기업을 추적 조사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음
    - 벤처기업의 생존율, 재무적인 현황 및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인하여 가시적인 성과분석을 하였음
    - 분석결과, 벤처기업의 연평균 생산율 및 부가가치율이 높았으나, 기업당 평균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 성장한계의 추가적인 극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제언함
  - 전병욱(2019)은 중소기업 실패기업인의 경제적 재기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을 법적 연구 및 문헌 검토를 통하여 분석하였음
    - 성실한 사업자의 재기 노력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범위에 과점주주를 제외하고 무한책임사원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조세특례상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신규 사업에서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유예시키는 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함

〈표 III-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 제목	주요 내용
김재진·문예영 (201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가 벤처기업의 핵심인재 유입 촉진 및 생태계 선순환 지원에 효과가 있었는지 운영성과를 평가함</li> <li>○ 기업(원천징수 의무자)이 겪는 세무행정상의 애로사항이 개별 근로소득자의 과세특례 이용실적 저하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임</li> <li>○ 또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할 때 전용계좌 개설을 위한 금융비용이 창업초기 벤처기업에 높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li> <li>○ 향후 제도의 일몰규정을 신설하여 정책적 목표 및 효과를 검토하여 제도 정비 및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li> </ul>
김희선 (2019)	벤처출신기업의 성과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2010년 벤처확인을 받은 벤처출신기업을 추적조사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음</li> <li>○ 벤처기업의 생존율, 재무적인 현황 및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인하여 가시적인 성과분석을 하였음</li> <li>○ 분석결과, 벤처기업의 연평균 생산율 및 부가가치율이 높았으나, 기업당 평균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li> <li>○ 성장한계의 추가적인 극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제언하고 있음</li> </ul>
전병욱 (2019)	중소기업 실패기업인의 제2차 납세의무 완화방안 연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실패기업인의 경제적 재기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을 법적 연구 및 문헌 검토를 통하여 분석하였음</li> <li>○ 성실한 사업자의 재기 노력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범위에 과점주주를 제외하고 무한책임사원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li> <li>○ 조세특례상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신규 사업에서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유예시키는 제도가 필요함</li> </ul>
김재진·홍범교 (2014)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재설정하고자 함</li> <li>○ 벤처기업 지원정책 중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정책은 조세지원제도이며, 벤처산업 육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하고, 소득세·법인세 감면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li> </ul>
김정기 (2014)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주요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법적연구 분석을 실시함</li> <li>○ 동 제도는 헌법적 타당성 및 이론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세수확보에 기여하는 공헌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폐지가 바람직함</li> <li>○ 존치하더라도 과점주주의 범위를 제한하는 개정이 절실함</li> </ul>

자료: 김재진·문예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2019 조세특례임의심층평가』, 2019. 9.  
 김희선, 「벤처출신기업의 성과분석」, 『정책연구』 19-19, 2019.  
 전병욱, 「중소기업 실패기업인의 제2차 납세의무 완화방안 연구」, 『세무와 회계연구』 vol.8, no.2, 2019.  
 김재진·홍범교,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2014.  
 김정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주요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조세연구』 14권 제1집, 2014. 4.

## 2. 주요국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 우리나라와 유사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를 운영하는 주요국은 없으므로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와 같은 과세특례제도를 찾아보기 어려움
  - (일본) 우리나라와 일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유사한 편이나, 우리나라는 공동사업자, 무상양도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고, 일본은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음
    - 일본은 제2차 납세의무를 크게 납세의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와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속한 것으로 보고 납세의무 책임을 확대하고 있음
    -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속한 것으로 보는 경우: 청산인 자산양도 등의 법률상 귀속자, 법인격 없는 단체에서 재산을 지급·분배받은 자, 사업양수인,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액에 의한 양수인 등에게 납세의무 책임을 확대함
    - 납세의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 무한책임사원, 동족회사, 공동사업자, 수익이 귀속되는 법률상 귀속자,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재산명의인에게 납세의무 책임을 확대함
  - (독일)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우리나라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와 가장 유사한 편이나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않음
    - 법정대리인, 탈세가담 법정대리인, 탈세자 및 조세범행자, 계좌진실성 의무 위반자, 연결납세의 자회사, 사업양수인과 물건소유자에게 조세채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미국)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규정은 단순한 편이며, 조세회피 및 미납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책임지도록 함
    - 제3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은 재산 양수인 및 수탁자 납세의무 책임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제2차 납세의무 성격과는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매우 드문 편이므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와 같은 특례제도는 찾아보기 어려움

- 일본의 경우, 동족회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유사하지만 동족회사 행위 계산 부인에 의하여 부과된 국세의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표 III-2> 주요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및 과세특례제도

구분	일본	독일	미국
제2차 납세의무 존재 여부	○	○	○
근거법률	「국세징수법」 제33조~제38조	「조세기본법(AO)」 제69조~제75조	「내국세입법(IRC)」 제6901조
제2차 납세의무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li> <li>-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회피 등 고의성으로 인한 제3자 의무위반인 경우</li> <li>- 제3자 의무위반이 아닌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의 양도가 무상/불충분한 대가로 이루어진 경우</li> <li>- 수탁자가 연방세보다 우선권이 없는 채무를 먼저 변제한 경우</li> </ul>
제2차 납세의무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한책임사원 및 청산인</li> <li>- 동족회사 출자자</li> <li>- 공동사업자</li> <li>- 수익귀속 법률상 귀속자</li> <li>-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재산명의인</li> <li>- 무상양수인 및 사업양수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대리인(고의, 중과실 또는 탈세가담자)</li> <li>- 탈세자 또는 조세장물범</li> <li>- 계좌진실성 위반자</li> <li>- 연결납세의 자회사</li> <li>- 사업양수인 및 물건소유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양수인 및 수탁자</li> </ul>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존재	×	×	×
조세회피 및 귀책사유 고려	×	○ (일부 예외)	○

주: 1. 일본-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청산인, 법률상 귀속자, 사업양수인, 무상양수인,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재산명의인, 독일- 제3자 의무위반이 아닌 경우: 사업양수인 및 물건소유자  
 자료: 전병욱, 「중소기업 실패기업인의 제2차 납세의무 완화방안 연구」, 『세무와 회계연구』, 2019, pp. 161~175  
 토대로 저자 작성

## IV. 타당성 평가





## IV. 타당성 평가

### 1.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의 정책대상

- 벤처기업 출자자에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는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큰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실패비용을 줄이고,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정책목적으로 동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벤처기업의 과점주주 비중 및 관련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매년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인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성이 있는 벤처기업의 벤처확인유형, 창업방식, 지분구조, 매출액 규모 및 연구개발비 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고 동 특례제도의 정책대상이 될 수 있는 벤처기업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함

#### 가. 벤처기업 확인유형

- 벤처기업 확인유형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벤처투자기업: 벤처캐피탈이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하고,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기업
  - 연구개발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5~10%)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업의 기술평가를 실시한 후 담보 없이 총자산의 10% 이상, 최소 8천만원 이상을 보증하는 경우
  - 기술평가대출기업: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업의 기술평가를 실시한 후 자금 대출을 하는 경우

<표 IV-1> 벤처기업 확인유형 분포

(단위: 개사, %)

구분		모집단 크기	기술평가 대출기업	기술평가 보증기업	벤처투자 기업	연구개발 기업	
전체		(36,065)	14.7	74.1	4.6	6.6	
업종	첨단 제조	에너지/화학/정밀	(3,053)	13.8	71.7	4.1	10.5
		의료/제약	(1,208)	16.8	59.3	9.5	14.3
		컴퓨터/반도체/ 전자부품	(3,697)	15.5	68.9	3.7	12.0
		통신기기/ 방송기기	(1,288)	9.6	71.5	4.8	14.1
	일반 제조	기계/자동차/금속	(7,278)	14.4	80.1	1.4	4.1
		음식료/섬유/ 비금속/기타제조	(7,833)	19.1	76.9	3.4	0.6
	첨단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 IT기반서비스	(4,281)	5.3	76.4	10.0	8.2
		정보통신/ 방송서비스	(2,509)	13.4	68.3	9.5	8.8
	일반 서비스	도소매/ 연구개발서비스/ 기타서비스	(4,127)	19.4	68.5	4.2	8.0
	기타	기타	(791)	7.5	87.3	4.0	1.2
종사 자 규모	1~9인	(19,414)	18.5	73.6	3.3	4.6	
	10~29인	(11,398)	12.9	75.7	4.0	7.4	
	30~49인	(2,527)	6.2	76.5	7.7	9.5	
	50~99인	(1,781)	3.5	70.6	13.5	12.4	
	100인 이상	(945)	0.4	64.8	14.9	19.9	
성장 단계	창업기	(1,551)	15.8	62.4	15.4	6.4	
	초기성장기	(9,573)	21.1	69.5	5.3	4.1	
	고도성장기	(13,842)	16.2	71.4	4.7	7.6	
	성숙기	(10,262)	7.2	82.9	2.5	7.4	
	쇠퇴기	(836)	4.3	85.9	1.3	8.4	
업 력	창업 3년 이하	(4,985)	26.6	64.3	6.7	2.4	
	4~10년	(18,110)	18.2	72.6	4.7	4.4	
	11~20년	(10,087)	5.9	78.6	4.0	11.5	
	21년 이상	(2,882)	2.4	84.6	2.7	10.2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2019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19. 12.

- 설문조사 결과 벤처기업 확인유형 중 기술평가보증기업이 74.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술평가대출기업 14.7%, 연구개발기업 6.6%, 벤처투자기업 4.6% 순으로 조사됨
- 전반적으로 벤처기업 확인유형 중 기술평가보증기업 비중이 높은 가운데 의료/제약에서 ‘연구개발기업’(14.3%) 유형 비율이 타 업종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연구개발기업’ 유형 비율이 높아진 반면, ‘기술평가대출기업’ 비율은 작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 나. 벤처기업의 창업방식

- 벤처기업의 창업방식은 ‘창업자가 독자적으로 창업’한 경우가 89.7%로 가장 많고, ‘대기업 등 타 기업의 분사 또는 계열사 형식으로 창업’한 경우 5.9%, ‘국가연구소, 대학교 등에서 창업보육(BI) 과정을 거쳐 창업’한 경우가 4.4% 순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 창업자가 단독으로 창업하는 경우는 86.7%로 나타남
- 공동 및 팀 창업을 한 경우는 전체 벤처기업의 13.3%이며, 평균 2.9명의 인원으로 공동 창업함
  
- 창업자의 창업 당시 관련분야 실무 경험연수는 평균 9.7년이며, 세부적으로는 5년 이하 38.9%, 6~10년 26.2%, 16년 이상 21.8%, 11~15년 13.0% 순으로 실무 경험을 보유함
- 벤처기업 창업주의 과거 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는 19.3%였으며 성공이 59.1%, 실패 경험은 40.9%로 조사됨
  - 평균 성공 및 실패 횟수는 각각 1.4회, 1.2회임

<표 IV-2> 창업자의 과거 창업 경험 및 결과

(단위: 개사, %, 회)

구분	모집단 크기	창업경험 없음	창업경험 있음	성공비율 (% , 횟수)		실패비율 (% , 횟수)			
전체	(36,065)	80.7	19.3	59.1	1.4	40.9	1.2		
업종	첨단 제조	에너지/화학/정밀	(3,053)	78.8	21.2	43.7	1.8	56.3	1.2
		의료/제약	(1,208)	74.6	25.4	54.8	1.7	45.2	1.5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697)	74.0	26.0	54.7	1.2	45.3	1.3
		통신기기/방송기기	(1,288)	81.4	18.6	59.8	1.2	40.2	1.2
	일반 제조	기계/자동차/금속	(7,278)	77.8	22.2	59.2	1.2	40.8	1.1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7,833)	80.3	19.7	68.6	1.4	31.4	1.2
	첨단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4,281)	89.1	10.9	57.7	1.9	42.3	1.7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509)	87.6	12.4	69.4	1.4	30.6	1.0
	일반 서비스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4,127)	81.8	18.2	58.3	1.2	41.7	1.1
	기타	기타	(791)	86.5	13.5	51.5	3.4	48.5	1.0
종사자 규모	1~9인	(19,414)	79.5	20.5	52.6	1.3	47.4	1.2	
	10~29인	(11,398)	82.9	17.1	66.4	1.4	33.6	1.2	
	30~49인	(2,527)	80.9	19.1	68.8	1.7	31.2	1.3	
	50~99인	(1,781)	77.4	22.6	80.4	1.7	19.6	1.2	
	100인 이상	(945)	85.3	14.7	65.2	1.6	34.8	1.1	
성장 단계	창업기	(1,551)	74.1	25.9	45.8	1.0	54.2	1.6	
	초기성장기	(9,573)	78.2	21.8	55.9	1.3	44.1	1.3	
	고도성장기	(13,842)	82.8	17.2	64.1	1.4	35.9	1.1	
	성숙기	(10,262)	80.9	19.1	58.2	1.4	41.8	1.1	
	쇠퇴기	(836)	85.8	14.2	84.8	1.1	15.2	1.0	
업력	창업 3년 이하	(4,985)	72.6	27.4	55.2	1.2	44.8	1.2	
	4~10년	(18,110)	81.0	19.0	56.6	1.5	43.4	1.3	
	11~20년	(10,087)	83.3	16.7	61.6	1.4	38.4	1.1	
	21년 이상	(2,882)	83.8	16.2	85.0	1.1	15.0	1.3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2019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19. 12

<표 IV-3> 벤처기업 지분구조 현황

(단위: 개사, %)

구분	모집단 크기	창업자	임직원 (대표이사 포함)	가족(대표이사나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지포함)	벤처캐피털 및 기관 투자자	엔젤 및 액셀러레이터	개인 투자자		
전체	(31,318)	49.1	27.7	11.8	2.5	1.4	7.5		
업종	첨단 제조	에너지/화학/정밀	(2,676)	53.2	22.5	12.1	3.9	0.4	8.0
		의료/제약	(1,082)	53.0	16.6	10.8	5.3	1.2	13.2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273)	50.4	21.4	11.9	3.6	1.9	10.9
		통신기기/방송기기	(1,216)	48.9	27.9	8.7	4.0	0.8	9.6
	일반 제조	기계/자동차/금속	(5,573)	60.2	14.5	17.5	1.3	0.3	6.1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6,465)	46.4	32.6	12.9	1.5	1.0	5.7
	첨단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4,088)	35.8	42.6	9.8	3.1	2.7	6.0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423)	41.2	37.8	6.5	2.2	4.0	8.2
	일반 서비스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3,764)	51.4	28.7	7.6	2.4	1.3	8.7
	기타	기타	(758)	52.5	28.5	14.2	0.4	0.7	3.7
중사자규모	1~9인	(15,607)	54.4	28.4	9.6	1.6	1.0	4.9	
	10~29인	(10,558)	46.0	28.9	14.5	2.2	1.1	7.4	
	30~49인	(2,460)	40.4	26.4	14.4	4.3	3.2	11.4	
	50~99인	(1,751)	42.1	20.7	13.3	6.5	2.3	15.1	
	100인 이상	(942)	32.6	19.9	9.7	7.4	4.6	25.9	
성장단계	창업기	(1,324)	65.1	15.1	7.8	4.1	3.0	4.9	
	초기성장기	(8,441)	53.8	29.0	7.7	2.4	1.3	5.8	
	고도성장기	(12,342)	46.7	28.7	13.2	2.7	1.4	7.4	
	성숙기	(8,527)	45.6	27.4	14.8	1.7	1.4	9.2	
	쇠퇴기	(683)	48.3	24.9	9.1	4.5	0.3	12.9	
업력	창업 3년 이하	(4,212)	62.9	24.6	5.2	2.0	0.9	4.5	
	4~10년	(15,894)	51.2	27.4	10.6	2.7	1.5	6.7	
	11~20년	(9,069)	41.2	30.3	15.4	2.4	1.5	9.2	
	21년 이상	(2,143)	40.8	25.6	18.3	2.1	1.3	11.9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2019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19. 12

#### 다. 벤처기업의 지분구조

- 벤처기업의 지분구조는 창업자의 지분이 49.1%로 가장 많고, 임직원 27.7%, 가족 11.8%, 개인투자자 7.5%, 벤처캐피탈 및 기관투자자 2.5%, 엔젤 및 액셀러레이터 1.4%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벤처기업의 지분구조는 ‘창업자’의 지분구조가 높은 반면,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계/자동차/금속이 60.2%로 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창업자의 지분은 줄어드는 반면, 벤처캐피탈 및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의 지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장단계별로 살펴보면 창업기 벤처기업은 창업자 65.1%로 타 성장단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임직원’은 15.1%로 낮게 나타난 반면, 성장단계가 진행될수록 개인투자자의 지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업력이 높아질수록 ‘창업자’의 지분은 감소하고, ‘개인투자자’의 지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라. 벤처기업의 매출액 규모

- 업종별로 살펴보면, 평균 매출액은 첨단/일반제조 및 첨단/일반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업종이 7,664백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는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업종 6,710백만원임
  -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업종은 타 업종에 비해 평균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3,846백만원으로 조사됐으나, 매출액 증가율은 28.3%로 타 업종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4> 2018년 벤처기업 경영성과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

구분		모집단 크기	매출액	영업 이익	금융 비용	순이익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영업 이익률	매출액 순 이익률	
전체		(36,065)	5,321	212	83	111	7.9	4.0	2.1	
업종	첨단 제조	에너지/화학/정밀	(3,053)	5,057	220	71	163	12.1	4.3	3.2
		의료/제약	(1,208)	4,391	-45	90	-234	9.5	-1.0	-5.3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697)	6,710	445	90	328	2.2	6.6	4.9
	일반 제조	통신기기/방송기기	(1,288)	6,394	104	117	-4	-8.5	1.6	-0.1
		기계/자동차/금속	(7,278)	5,184	265	84	130	3.7	5.1	2.5
	첨단 서비스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7,833)	5,609	304	107	204	8.0	5.4	3.6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4,281)	3,846	70	70	-12	28.3	1.8	-0.3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509)	5,167	147	46	85	15.9	2.9	1.6
	일반 서비스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4,127)	5,081	-12	70	-95	8.0	-0.2	-1.9
	기타	기타	(791)	7,664	422	51	334	11.7	5.5	4.4
중사자규모	1~9인	(19,414)	1,845	87	32	82	19.8	4.7	4.5	
	10~29인	(11,398)	4,232	187	66	142	6.3	4.4	3.4	
	30~49인	(2,527)	10,853	264	164	41	2.2	2.4	0.4	
	50~99인	(1,781)	20,438	533	363	-270	4.2	2.6	-1.3	
	100인 이상	(945)	46,590	2,351	604	1,231	8.0	5.0	2.6	
성장단계	창업기	(1,551)	1,645	-226	27	-298	20.8	-13.8	-18.1	
	초기성장기	(9,573)	2,750	16	54	-15	32.1	0.6	-0.6	
	고도성장기	(13,842)	5,397	224	82	136	12.3	4.1	2.5	
	성숙기	(10,262)	8,237	470	118	296	-0.7	5.7	3.6	
	쇠퇴기	(836)	4,542	-71	104	-361	-8.5	-1.6	-8.0	
업력	창업 3년 이하	(4,985)	2,994	124	43	96	50.3	4.1	3.2	
	4~10년	(18,110)	3,431	59	59	1	7.9	1.7	0.0	
	11~20년	(10,087)	7,903	408	119	205	4.8	5.2	2.6	
	21년 이상	(2,882)	11,826	616	173	478	2.4	5.2	4.0	

주: 구분란 전체의 모집단 크기를 제외한 매출액, 영업이익 등은 평균값임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2019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19. 12

## 마.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

- 2018년 벤처기업의 투자처별 총투자액은 평균 499.0백만원이며, 그중 국내 R&D 투자액이 325.4백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내 설비투자액 122.7백만원, 기타 42.1백만원, 해외 투자액 8.8백만원의 순으로 조사됨

<표 IV-5> 2018년 벤처기업 투자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

구분		모집단 크기	국내설비 투자액	국내 R&D 투자액	해외 투자액	기타	전체 투자액	매출액 연구개발 비율	
전체		(31,318)	123	325	9	42	499	5.5	
업종	첨단 제조	에너지/화학/정밀	(2,676)	305	306	14	83	709	5.5
		의료/제약	(1,082)	239	557	11	112	919	11.5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273)	198	343	24	17	582	4.6
		통신기기/방송기기	(1,216)	61	378	4	6	449	5.6
	일반 제조	기계/자동차/금속	(5,573)	181	195	3	115	495	3.1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6,465)	66	252	3	5	326	3.9
	첨단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4,088)	50	442	5	4	501	11.0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423)	62	379	17	17	474	7.1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3,764)	56	414	11	45	527	7.6
	기타	기타	(758)	58	241	7	10	316	3.1
중사자 규모	1~9인	(15,607)	53	138	3	12	206	6.8	
	10~29인	(10,558)	87	290	4	27	408	6.7	
	30~49인	(2,460)	227	565	5	18	815	5.2	
	50~99인	(1,751)	278	844	44	83	1,249	4.1	
	100인 이상	(942)	1,117	2,232	106	702	4,157	4.8	
성장단계	창업기	(1,324)	82	370	3	56	511	20.0	
	초기성장기	(8,441)	54	205	6	10	275	6.8	
	고도성장기	(12,342)	165	355	10	29	560	6.1	
	성숙기	(8,527)	138	404	11	94	647	4.3	
	쇠퇴기	(683)	83	200	8	7	298	3.8	
업력	창업 3년 이하	(4,212)	114	188	12	19	333	5.5	
	4~10년	(15,894)	105	252	7	32	396	6.8	
	11~20년	(9,069)	144	456	8	17	624	5.3	
	21년 이상	(2,143)	180	588	18	270	1,055	3.8	

주: 구분란 전체의 모집단 크기를 제외한 매출액, 영업이익 등은 평균값임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2019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19. 12

- 업종별로는 의료/제약 업종은 전체 투자액 919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며, 다음으로는 에너지/화학/정밀(709백만원),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582백만원)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의 경우, 의료/제약 업종이 11.5%로 가장 높은 반면, 기계/자동차/금속 업종과 기타 업종은 3.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바. 과점주주 벤처기업의 특성분석 결과

- 벤처기업의 확인유형은 기술평가 보증기업 유형의 비중이 74.1%, 창업자가 단독으로 창업하는 비중이 86.7%이며, 업종별로는 통신기기/방송기기를 제외한 첨단 제조 및 기계/자동차/금속 업종이 해당함
- 종업원 규모로는 1~9인만 과점주주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창업자가 단독으로 창업하여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벤처확인을 받는 벤처기업 수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IV-6> 벤처기업 기술평가 유형

평가구분	정의	세부평가 종류
기술 가치 평가	○ 당해 기술에 의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금액으로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li> <li>- 외국인 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li> <li>- 기술의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li> <li>- 기술이전·거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li> <li>- 기술사업의 이전·양수도를 위한 평가 등</li> </ul>
기술 사업 타당성 평가	○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할 때에 당해 사업의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확인, INNO-BIZ 선정평가</li> <li>- 발명의 사업성평가</li> <li>- 정부, 지자체 또는 금융기관 등의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li> <li>- 금융기관 등의 여신심사용 기술평가</li> <li>- 기술이전·거래 등을 위한 평가</li> <li>- R&amp;D 평가</li> <li>- 보증지원을 위한 평가 등</li> </ul>
종합 기술 평가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또는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용 평가</li> <li>-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평가</li> <li>- 주식가치평가 등</li> </ul>

자료: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https://www.kibo.or.kr>), 검색일자: 2020. 6. 1.

- 기술평가는 평가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타당성 평가’, ‘종합기술평가’ 등으로 운용되고 있음<sup>16)</sup>
  - 또한, 벤처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시기는 대체로 창업기 및 초기 성장기이며,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이 이에 해당함
-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2019) 보고서를 통하여 본 연구의 정책대상자가 되는 벤처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창업 초창기의 벤처기업으로 창업자가 단독으로 창업하고 기술평가 보증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임
  - 업종은 주로 통신기기/방송기기를 제외한 첨단제조업 기계/자동차/금속업이며, 종업원 규모는 1~9인 규모로 매우 소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창업 초창기 및 초기 성장기 벤처기업의 매출액 규모는 각 16억 4,500만원, 27억 5,000만원에 해당하며, 창업 3년 이하 및 4~10년 이하 벤처기업의 매출액 규모는 각 29억 9,400만원, 34억 3,100만원임
  - 창업 초창기 및 초기 성장기 벤처기업의 국내 연구개발비 규모는 각 3억 7,000만원, 2억 500만원에 해당하며, 창업 3년 이하 및 4~10년 이하 벤처기업의 매출액 규모는 각 1억 8,800만원, 2억 5,200만원임

## 2. 벤처기업의 재창업 지원제도

### 가. 벤처기업 생존율 현황

-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는 벤처기업의 실패비용을 감소시켜 재창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벤처기업의 생존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 현재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에 대한 실패율 및 재창업 분석은 거의 드문 편이며, 일반 중소기업의 실패율 및 재창업에 대한 연구도 매우 미미한 편임

16) 기업에 대한 정량화된 평가는 주로 신용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초기기업 또는 기술력 신형 기업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재무등급)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낮게 산출되므로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중소기업벤처부를 중심으로 재창업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체계<sup>17)</sup> 및 조직<sup>18)</sup>을 구축하고 있음

□ 2011~2019년 중소기업 부도법인 수를 살펴보면 2011년 967개에서 2019년 319개로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부도법인이 감소하고 있으며, 법인 수의 비중이 높은 서울 및 경기지역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관찰됨

<표 IV-7> 지역별 중소기업 부도법인 수

(단위: 개사)

지역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967	890	705	614	517	433	379	350	319
서울	427	347	296	236	179	124	106	84	76
부산	66	55	45	34	36	39	30	28	27
대구	58	32	24	36	24	21	16	14	16
인천	46	32	39	26	31	19	20	17	9
광주	54	37	31	16	13	12	8	8	11
대전	18	24	17	15	7	16	11	7	4
울산	12	5	7	8	6	2	9	6	12
세종	-	1	0	0	0	2	2	1	1
경기	118	170	112	132	105	102	104	89	83
강원	21	22	17	9	8	5	3	7	1
충북	24	13	8	8	12	10	3	7	8
충남	13	16	7	4	12	7	5	9	11
전북	32	30	19	29	27	13	18	16	3
전남	19	25	11	14	8	7	5	10	4
경북	19	24	26	15	23	16	16	17	22
경남	40	48	42	24	22	32	19	28	27
제주	8	9	4	8	4	6	4	2	4
기타	-	-	-	-	-	-	0	0	-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통계DB, ([http://211.253.148.159:8083/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N\\_A10255&conn\\_path=I2](http://211.253.148.159:8083/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N_A10255&conn_path=I2)), 검색일자: 2020. 6. 1.

17) 『서울경제』,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재도전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https://sedaily.comNewsView/1YZ2OEXUQKh>), 2020. 7. 26.

18) 재도전종합지원센터(<https://rechallenge.or.kr/>)

- 2019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기업 중 재창업 경험이 있는 기업은 28.2%로 나타났으며, 전체 창업기업의 평균 창업횟수는 1.3회로 나타났음
  - 업력별로는 3년차 창업기업에서 재창업비율이 31.4%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창업횟수는 1.3~1.4회로 큰 차이가 없었음
  - 창업횟수를 구간별로 살펴보면, 1회 창업이 71.8%, 재창업 기업 28.2% 중 2회 창업이 23.8%, 3회 창업이 2.9%, 4회 창업이 1.2%, 5회와 6회 이상이 각각 0.1%로 나타남
  - 2회 이상 창업경험이 있는 재창업 기업 28.9%의 평균 창업횟수는 2.2회로 창업기업 전체 창업횟수 1.4회 대비 0.8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벤처출신기업의 성과분석』(김희선, 2019, 중소기업연구원)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벤처기업의 기간별 평균 생존율이 전반적으로 연차경과에 따라 생존기업 수와 생존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시간흐름에 따른 그 감소폭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2000~2018년 전체 벤처기업의 기간별 평균 생존율은 1년차 96.1%, 3년차 86.9%, 5년차 78.4%, 10년차 62.8%로 연차에 따라 생존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
  - 2008년 기준 벤처로 확인받은 13,943개사 중 2018년 현재까지 생존한 기업은 9,231개사로 10개사 중 6.6개사가 10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1년차(95.7%, 13,338개사), 3년차(87.4%, 12,189개사), 5년차(79.6%, 11,097개사), 10년차(66.2%, 9,231개사)
  
- 지난 18년간(2000~2018년) 전체 벤처기업의 기간별 평균 생존율 증가분을 계산해 보면 1년차 0.11%p, 3년차 0.57%p, 10년차 1.27%p로 나타나, 최근에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일수록 시간경과에 따른 생존율 감소폭(속도)이 낮아지고 있음
  - 즉, 더 오래 생존하는 경향이 관찰됨
  
- 벤처기업 중 제조업의 경우 2000~2018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의 기간별 평균 생존율을 계산해 보면 1년차 99.2%, 3년차 88%, 5년차 79.9%, 10년차 65.2%로 연차에 따른 생존율 감소 속도는 건설업과 기타업종에 속한 기업에 비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기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10,387개사 중 2018년 현재까지 생존한 기업은 6,946개사로, 10개사 중 6.7개사가 10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1년차 95.8%(9,946개사), 3년차 87.7%(9,110개사), 5년차 79.8%(8,293개사), 10년차 66.9%(6,946개사)

□ 지난 18년간(2000~2018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의 기간별 평균 생존율 증가분을 보면, 1년차 0.08%p, 3년차 0.40%p, 5년차 0.56%p, 10년차 0.66%p로 나타나, 최근에 확인받은 벤처기업일수록 시간 경과에 따른 생존율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음이 관찰됨

<표 IV-8> 벤처기업 연차별 평균 생존

(단위: 개사)

연도	기업 수	0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2000	3,535	3,486	3,392	3,199	3,015	2,852	2,707	2,559	2,454	2,339	2,260
2001	2,874	2,848	2,740	2,589	2,440	2,301	2,157	2,048	1,973	1,914	1,842
2002	2,532	2,515	2,434	2,344	2,232	2,105	2,010	1,926	1,857	1,793	1,715
2003	2,674	2,655	2,579	2,474	2,345	2,219	2,126	2,044	1,954	1,884	1,829
2004	2,975	2,963	2,877	2,744	2,619	2,508	2,394	2,299	2,216	2,140	2,069
2005	3,809	3,765	3,655	3,511	3,351	3,218	3,077	2,943	2,820	2,718	2,621
2006	4,912	4,852	4,690	4,488	4,276	4,115	3,935	3,762	3,586	3,472	3,349
2007	6,697	6,649	6,404	6,142	5,862	5,578	5,324	5,099	4,917	4,713	4,545
2008	10,387	10,264	9,946	9,557	9,110	8,701	8,293	7,986	7,655	7,374	7,165
2009	13,107	13,002	12,619	12,071	11,497	10,920	10,485	10,040	9,638	9,347	9,068
2010	8,899	8,811	8,511	8,130	7,768	7,408	7,083	6,809	6,596	6,378	
2011	9,900	9,821	9,507	9,134	8,755	8,382	8,041	7,769	7,523		
2012	9,756	9,682	9,422	9,084	8,686	8,324	8,031	7,735			
2013	10,432	10,349	10,094	9,722	9,364	9,042	8,743				
2014	9,977	9,904	9,665	9,313	8,978	8,660					
2015	11,050	10,991	10,734	10,417	10,087						
2016	10,939	10,891	10,632	10,289							
2017	11,662	11,606	11,355								
2018	10,776	10,737									

자료: 김희선, 『벤처출신기업의 성과분석』, 중소기업연구원, 2019.

## 나. 벤처기업 재창업 지원제도

- 정부 및 민간 기관들은 실패기업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함
  - 국내 최초의 재기 지원제도인 벤처패자부활제(2005년) 이후 2010년부터 재창업자금 지원제도 수립을 시작으로 재도전지원사업을 본격화함
    - 재도전지원사업: (폐업 전)위기극복 지원 + (폐업 후)재창업 지원
  
- 다수의 공적·사적 기관들은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재창업 지원제도를 운영함
  - 재창업 기업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재도전 지원제도의 개선 및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음
  
- 재도전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재기 지원 사업의 목적은 실패 중소기업인에 대한 재기 지원을 통해 실패 기업인의 기술 및 경험 등 사회적 자산 사장 방지 및 우수인재의 창업촉진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회생지원을 통해 유무형 자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부실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재기를 지원하여 연쇄부도 방지 등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재기지원 예산은 2020년 290개사 내외(총 175억원)으로 1개의 평균 지원금액은 4천만~6천만원의 규모임
  
- 우리나라의 재도전 지원정책은 2013년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내 ‘재도전 성장과’가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내 ‘재기지원과’에서 담당함
  -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는 ‘7전 8기가 가능한 재도전 환경 구축’을 목표로 재도전 인프라 확충과 경영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여 시행 중
  
- 현재 재도전 지원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재기중소기업개발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음

- 중소기업부에서 2014년 설립한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는 경영위기기업 및 사업실패 후 재기를 준비 또는 진행하고 있는 재도전 기업을 대상으로 재기상담, 자금지원, 사후멘토링 등 재도전의 전 과정을 지원
- 여러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도전 정책은 기업생태계 과정 중 퇴출 및 재유입 단계에서 주로 적용되며, 기업의 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

<표 IV-9> 2019년 재도전 지원제도 개요

구분	지원제도	지원내용	담당기관
종합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신용회복, 자금유자, 종합전문상담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신용회복, 자금유자, 종합전문상담	중소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일반)	채무감면, 변제유예, 분할상환, 자금유자	(신용회복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미회복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신용회복 절차	신용회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구조공단 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채무감면, 상환유예, 상환연장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 채무상환, 잔여채무 면책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면책제도	채무상환, 잔여채무 면책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채무감면, 분할상환	한국자산관리공사
	법인기업 파산제도	기업파산, 재산 매각배당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채무상환, 분할변제	재도전종합지원센터
	기업회생제도	채무상환, 분할변제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 워크아웃	채무조정 대출만기 연장, 금리 재조정	금융감독원
	신용정보 불이익 해소	신용회복, 신용정보 공유제한	한국신용정보원

<표 IV-9>의 계속

구분	지원제도	지원내용	담당기관
자금지원	재도전 성공패키지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및 멘토링, 사무공간	창업진흥원
	재도전 기술개발 사업	자금지원, R&D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전환 기술개발 사업	자금지원, R&D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세컨찬스 프로그램	자금지원, 교육	한국콘텐츠진흥원
자금투자	재기지원펀드	자금투자	각 운용사
	기업구조혁신펀드	자금투자	선정된 운용사
자금융자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신용회복, 자금융자, 종합전문상담	중소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일반)	채무감면, 변제유예, 분할상환, 자금융자	(신용회복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미회복자)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자금(융자상환형)	채무감면, 변제유예, 분할상환, 자금융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 지원	자금융자, 컨설팅 및 비용지원, 세제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개선 전용자금	자금융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저신용 특별자금보증	자금융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지원	신용보증기금 재기보증	보증지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재기보증	보증지원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도전지원특례보증	보증지원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재도전기업 계약이행 보증보험 지원	보증지원	서울보증보험, 중소기업진흥공단
	저신용특별자금보증	보증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실경영 평가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제도	성실경영평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	재도전 성공패키지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및 멘토링, 사무공간	창업진흥원
	재기중소기업 경영자 힐링캠프	교육	(재)재기중소기업개발원

<표 IV-9>의 계속

구분	지원제도	지원내용	담당기관
종합전문 상담	제도전 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신용회복, 자금융자, 종합전문상담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자금투자, 자산매각, 상담	한국자산관리공사
컨설팅 및 멘토링	재기지원펀드	자금투자, 자산매각, 상담	각 운용사
	제도전 성공패키지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및 멘토링, 사무공간	창업진흥원
컨설팅 및 비용지원	사업전환 지원	자금융자, 컨설팅 및 비용지원, 세제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진로제시 컨설팅	컨설팅 및 비용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구조개선 계획 수립 지원	컨설팅 및 비용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회생컨설팅	컨설팅 및 비용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정리 컨설팅	컨설팅 및 비용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컨설팅 및 비용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자산매매	중소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	자산매매	중소기업진흥공단
	캠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자산매매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회사, 법원, 보증기관
신용정보 공유제한	신용정보 불이익 해소	신용회복, 신용정보 공유제한	한국신용정보원
세제지원	사업전환 지원	자금융자, 컨설팅 및 비용지원, 세제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재기중소기업인 조세지원	세제지원	관할세무서, 제도전종합지원센터
사무공간	제도전 성공패키지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및 멘토링, 사무공간	창업진흥원
클라우드 펀딩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한 자금조달	클라우드 펀딩, 투자자 모집	온라인 펀딩포털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 제도전 지원제도」, 2019. 1

## 다. 벤처기업 창업 및 재창업관련 조세지원제도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실패비용을 감소시켜 출구전략을 마련해주고, 재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벤처기업의 창업 및 재창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도 존재하는바,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각 조세특례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함
  - 현재 국세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통해 재기 기업인에 대한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고 있음

### 1)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하여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창업벤처기업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정책대상자)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 불가
    -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 불가
  - (적용요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총 5년간)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 과세연도로 봄
  - (적용효과)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 대해 50%를 감면
  - (업종특례) 창업벤처중소기업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75%를 감면하고,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50%를 감면

## 2) 재기중소기업인 국세 징수유예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에 의하여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재기중소기업인은 국세 징수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정책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이 위기에 처한 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 「창업지원법」 제4조의3에 따른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적용요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i)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봄) 미만이고 신청일 당시 체납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자
    - ii)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자
      - 중진공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10억원
      -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10억원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금액 제한 없음
    - iii)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신청일 당시 다음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갖출 것
      -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할 것
      -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것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것
- (적용효과)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최대 3년 이내 징수유예
  - 관할 세무서에서 징수유예기간 중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음
- (신청방법) 납부할 국세(세목, 납부기한, 세액 등), 징수유예를 받은 이유와 기간 등을 징수유예신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

### 3)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처분 유예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의해 재기중소기업에 대해서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을 최대 3년간 유예함
  - (정책대상 및 적용요건) 국세 징수유예 신청대상과 동일
  - (적용효과)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을 최대 3년간 유예
  - (신청방법) 납부할 국세(세목, 납부기한, 세액 등),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이유와 기간 등을 체납처분유예신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

## 3. 타당성 분석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는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큰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실패비용을 줄이고,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정책목적이지만 아직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좀 더 확대하여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창업기업 중 재창업 경험이 있는 기업은 28.2%로 나타났으며, 전체 창업기업의 평균 창업횟수는 1.3회로 나타남
- 본 연구의 정책대상자는 창업 초창기의 벤처기업으로 창업자가 단독으로 창업하고 기술평가보증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며, 첨단제조업의 소규모 기업에 해당

- 창업초기 벤처기업 생존율은 78.4%(5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현 제도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정책홍보 및 안내 등 적극적 세무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일반적으로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낮고, 법인세 및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로 체납되는 세목은 부가세 및 원천세 등일 확률이 높음
  - 이들 기업의 경우, 세무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소기업의 경우, 직권 폐업이 대다수이며, 체납독촉 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안내가 고지될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동 특례제도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고지 시 동 특례제도를 같이 고지하는 행정안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적용요건 완화) 동 특례제도의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직권폐업되는 소규모의 벤처기업은 장부비치 및 증빙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임
  - 벤처기업 인증 시 기업의 기술력 및 성장성에 대하여 엄격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별도 적용요건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적용한도액) 2017~2019년 징수연도 기간 동안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 원납세자별 평균 81.86백만~86.04백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현 특례제도의 한도(1인당 2억원)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납세자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출자자는 평균 1.06~1.21명(개)이므로 납세자별 지정금액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납세자별 과점주주 지정금액 최대금액은 2017년 739.5억원임
- (타 제도와 중복성) 실패기업의 재창업 재정지원으로 ‘벤처패자부활제(2005년)’가 최초 도입된 이후 중소기업벤처부를 중심으로 매우 적극적인 지원정책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 및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음. 다만, 담당기관이 매우 다양하므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운영은 어려운 편임

-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자금지원(보조금), 자금투자, 자금융자, 보증지원, 교육 및 상담, 컨설팅, 멘토링, 자산매매, 사무공간 제공, 법인신용카드 발급, 자동차 리스, 클라우드 펀딩 및 성실경영평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로 인하여 과점주주의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므로 자금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는 자금지원, 자금투자, 자금융자 및 보증지원과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함
  - 세제지원으로는 국세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및 법인세 감면 등이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법인세 감면이 있으나 동 특례제도와 제도적 측면에서 연관성이 적고, 재창업 지원을 위한 국세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제도는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관성이 떨어짐
- (쉬운 재도전 환경 조성) 다각적인 재도전 저해요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력의 창업 기피와 재도전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하기 때문에 (재)창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는 필수적
- 성실실패에도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11달 이내 검증, 경영이외 이 중처벌 금지 등)하고 재창업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자 공제제도(압류가 불가하도록 공제금지급권리의 양도·압류·담보제공 불가 명시) 운영
    - 성실실패: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은 기업 중 동일업종 평균 매출액 및 사업소득 임금근로자의 중위소득 미달 등 주요 지표로 판단

## V. 효과성 평가





## V. 효과성 평가

### 1.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분석

#### 가. 세수효과 추정을 위한 가정

- 동 과세특례는 2018년 도입된 제도로 조세지출이 발생한 바 없으나, 향후 동 과세특례가 존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지출규모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로 인한 미래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함
  - ① 벤처기업의 체납금액: 벤처기업이 체납한 법인세부담액 및 법인세에 부가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의 금액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②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sup>19)</sup>의 수: 벤처기업의 투자자 중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의 수나 체납금액 중 과점주주 지정금액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③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 규모: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를 초과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됨
  - ④ 소기업 기준: 귀속사업연도 기준으로 매출액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의 기업으로 i) 로봇제조업 등은 120억원 이하 ii) 의료기기제조업 등은 80억원 이하 iii) 프로그래밍 및 SW개발업 등은 50억원 이하 iv) 엔지니어링업 등은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및 출자자 중 i) 직전 3년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을 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 경우 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ii)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iii) 벤처기업 중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사

19) 대다수 벤처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만 고려하여 분석

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가 있다면 동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살펴본 바와 같이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관련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세무 및 회계정보와 지분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동 특례제도로 인하여 발생한 조세지출이 없으므로 기존 정보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도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해 발생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한 조세수입규모를 기준으로 동 특례제도로 인한 미래 세수효과를 추정하고자 함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한 조세수입규모는 법인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 등을 포함한 조세수입규모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추정하고자 함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징수실적 증가율 및 지정금액 대비 징수실적 비중을 이용하여 분석
    - 일반기업 기업 수 대비 벤처기업 기업 수와 일반기업 매출액 대비 벤처기업 매출액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추가적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징수실적 중 법인세 세목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함

#### 나. 세수효과 추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세수입규모에 근거하여 동 특례제도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를 최대치로 추정한 결과, 향후에도 동 특례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됨
  - 분석은 일반기업 수 대비 벤처기업 수 비중,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14.39%) 및 징수실적(19.56%)의 5개년 평균 증가율 자료가 활용되었음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세수입규모는 법인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금융소득세 및 기타 간접세 등을 포함한 전체 징수실적이므로 본 연구의 대상범위보다 넓음

- 따라서 동 특례적용요건의 소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비중, 법인세 및 부가되는 세금,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한 배제규정을 제외하고 추정한 금액  
이므로 세수효과 추정의 최대치라고 볼 수 있음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 인원 및 금액의 5년 평균 증가율은 각 6.94% 및 14.39%, 징수실적의 5년 평균 증가율은 19.56%임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 대비 징수실적 비중의 5년 평균값은 4.76%임
- 2015~2016년 지정금액 및 징수실적의 증감률은 매우 편차가 심한 편이나 징수실적의 규모는 400억~800억원의 범위 내에서 편차가 있음

<표 V-1>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징수실적 금액

(단위: 명(개), 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지정인원 및 금액	19,737	10,066	23,879	15,044	21,707	14,183	24,254	15,682	25,256	16,192	23,774	15,275
증가율	-		20.99	49.45	-9.10	-5.72	11.73	10.57	4.13	3.25	6.94	14.39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징수실적 및 비중	437	4.34	863	5.74	598	4.22	866	5.52	577	3.56	726	4.76
증가율	-		97.48		-30.71		44.82		-33.37		19.56	

주: 1. 증가율은 (당해년도 - 전년도)/전년도 × 100으로 계산

2. 징수실적 비중은 징수실적/지정금액 × 100으로 계산

3. 평균은 5개년 증가율 및 비중의 평균값임

자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 1) 총활동기업 수 대비 벤처기업 수 비중으로 세수효과 추정

- 2018년 기준, 가동기업 수는 816.4천개이며, 벤처기업 수<sup>20)</sup>는 36.8천개이며, 전체 가동기업 수 대비 벤처기업 수 비중은 4.51%임
- 2010~2018년 9개년 평균 가동기업 수는 633천개이며, 평균 벤처기업 수는 31천개로 평균 벤처기업 수 비중은 4.88%임

20) 벤처기업 수는 『국세통계연보』상 별도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동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

- 2010년 대비 2019년 기준 가동기업 수는 348.97천개가 증가하였으며, 벤처기업 수는 12.2천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V-2> 가동기업 수 대비 벤처기업 비중

(단위: 천개,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가동기업 수	467.40	499.60	538.13	576.14	623.41	673.37	726.70	769.68	816.37	632.31
벤처기업 수	24.60	26.10	28.20	29.10	29.90	31.30	33.40	35.30	36.80	30.52
벤처기업 비중	5.26	5.22	5.24	5.05	4.80	4.65	4.60	4.59	4.51	4.88

주: 1. 벤처기업 비중은 벤처기업/가동기업 수 × 100으로 계산

2. 평균은 9개년 기업 수 및 비중의 평균값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 2020~2022년 3개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금액은 35.43억~46.41 억원이고, 3개년 평균 면제금액은 40.8억원임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 및 징수실적은 일정비율로 증가하지 않으므로, 5개년 평균금액을 2020년 기준으로 산정하되 3개년만 추정하였음
- 현행기준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추정된 조세지출 규모(연평균 40.8억원)보다 훨씬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됨
  - 과세특례 적용요건은 ① 법인세 세목 ② 벤처기업 ③ 매출액 대비 연구비 비중 5% 이상 ④ 소기업 ⑤ 「조세범처벌법」 등의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표 V-3>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세수효과 추정

(단위: 억원)

연도	2020	2021	2022	합계	평균
지정금액	15,275	17,473	19,987	52,735	17,579
징수실적	726	831	951	2,508	836
면제금액	35.43	40.55	46.41	122.39	40.80

주: 1. 지정금액: 2015~2019년 5개년 평균금액을 2020년 금액으로 기준하여 평균증가율 14.39%를 적용하여 계산

2. 징수금액: 2015~2019년 5개년 평균금액을 2020년 금액으로 기준하여 지정금액 대비 비중 4.76%를 적용하여 계산

3. 면제금액: 징수실적 × 4.88% 비중을 곱한 값임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및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 2) 전체기업 대비 벤처기업 매출액 비중으로 세수효과 추정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세수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기업 매출액 대비 벤처기업 매출액 비중을 사용하여 계산함
  - 2018년 기준 전체기업 수 및 매출액은 각 529,741개, 3,707조원이며, 1개 기업 매출액 평균은 6,999.61백만원임
    - 2014년 대비 중소기업 수는 증가하였으나, 일반기업 수는 감소하였고, 전체 기업 수는 증가하였음
    - 2014년 대비 매출액은 중소기업, 일반기업 및 전체기업 모두 증가하였으나, 1개 기업 평균 매출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면제 세수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체 기업 매출액 규모를 사용하고자 함

<표 V-4> 전체기업의 매출액 추이

(단위: 개사, 백만원, %)

연도	중소기업 매출액		일반기업 매출액		전체기업 매출액		매출액 평균
	기업 수	금액	기업 수	금액	기업 수	금액	
2014	447,109	1,248,182,550	82,632	2,459,797,567	529,741	3,707,980,117	6,999.61
2015	477,157	1,279,209,265	91,495	2,493,901,376	568,652	3,773,110,641	6,635.18
2016	515,288	1,355,195,927	103,096	2,401,469,826	618,384	3,756,665,753	6,074.97
2017	555,148	1,434,976,518	110,613	2,441,827,602	665,761	3,876,804,120	5,823.12
2018	544,261	1,603,359,027	64,691	2,616,411,462	608,952	4,219,770,489	6,929.56

주: 1. 전체기업 매출액 = 중소기업 수(매출액) + 일반기업 수(매출액)

2. 매출액 평균 = 전체 매출액 금액/전체기업 수

자료: 국세청 각연도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 2019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벤처기업 매출액은 191조원이며, 1개 기업 매출액 평균은 5,321백만원임
  - 다만, 설문조사에 의한 벤처기업의 매출액이므로 벤처기업의 전체 매출액 및 공신력 있는 금액으로 볼 수는 없음

- 2014년 이후 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대비 1,869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V-5> 벤처기업 매출액 추이

(단위: 개사, 백만원,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벤처기업 수	29,844	31,189	33,289	35,187	36,065
매출액	214,573,521	215,908,755	228,162,806	225,275,344	191,908,501
평균 매출액	7,190	6,923	6,854	6,402	5,321
증가율	-	-3.71	-1.00	-6.59	-16.89

주: 1. 전체기업 매출액 = 중소기업 수(매출액) + 일반기업 수(매출액)

2. 매출액 평균 = 전체 매출액 금액/전체기업 수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각 연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 2018년 기준 전체기업 대비 벤처기업 매출액 비중은 5.18%로 나타났으며, 5개년 평균 비중은 5.57%임
  - 2014~2018년 5년 동안 전체기업 대비 벤처기업 매출액 비중은 5.18~5.89% 일정한 범위 내의 비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및 2018년 전체기업 대비 벤처기업 매출액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V-6> 전체기업 매출액 대비 벤처기업 매출액 비중

(단위: 백만원,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벤처기업 매출액(A)	214,573,521	215,908,755	228,162,806	225,275,344	191,908,501	215,165,785
전체기업 매출액(B)	3,773,110,641	3,756,665,753	3,876,804,120	4,219,770,489	3,707,980,117	3,866,866,224
비중(C=A/B)	5.69	5.75	5.89	5.34	5.18	5.57

주: 1. 비중 = 벤처기업 / 매출액 × 100

2. 평균: 2014~2018년 5개년 평균값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각 연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및 각 연도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 2020~2022년 3개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금액은 40.44억~52.97 억원이었으며, 3개년 평균 면제금액은 46.57억원임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 및 징수실적은 일정비율로 증가하지 않으므로, 5개년 평균금액을 2020년 기준으로 산정하되 3개년만 추정하였음
  - 현행기준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추정된 조세지출 규모(연평균 46.57억원)보다 훨씬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적용요건) ① 법인세 세목 ② 벤처기업 ③ 매출액 대비 연구비 비중 5% 이상 ④ 소기업 ⑤ 「조세범처벌법」 등의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표 V-7〉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세수효과 추정

(단위: 억원)

연도	2020	2021	2022	합계	평균
지정금액	15,275	17,473	19,987	52,735	17,579
징수실적	726	831	951	2,508	836
면제금액	40.44	46.29	52.97	139.70	46.57

- 주: 1. 지정금액: 2015~2019년 5개년 평균금액을 2020년 금액으로 기준하여 평균증가율 14.39%를 적용하여 계산  
 2. 징수금액: 2015~2019년 5개년 평균금액을 2020년 금액으로 기준하여 지정금액 대비 비중 4.76%를 적용하여 계산  
 3. 면제금액: 징수실적 × 5.57% 비중을 곱한 값임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중소기업벤처부,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및 각 연도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 3)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 대상으로 한 세수효과: 법인세

- 2017~2019년 3년 동안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세수입 중 과점주주이면서 체납된 세목이 법인세에 해당하는 조세수입 금액만을 사용하여 세수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이는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를 적용하는 세목은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만 해당하고, 벤처기업의 회사형태가 대부분 주식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임
  - 2017~2019년 3년 평균 지정인원 및 금액은 각 20,400명(개), 5,439억원이었음
    - 체납된 법인세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의 연도별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평균 0.4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2017~2019년 3년 평균 징수실적은 215.59억원, 지정금액 대비 징수실적 비중은 3.96%임

- 징수실적은 연도별 변화가 매우 큰 편이며, 3개년 평균 -1.38%, 지정금액 대비 징수실적 비중은 3개년 3.18~4.97% 범위 내에 있음

<표 V-8>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징수실적 금액: 법인세

(단위: 명(개), 억원, %)

구분	2017		2018		2019		평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지정인원 및 금액	17,383	5,420	20,775	5,431	23,043	5,466	20,400	5,439
증가율	-		19.51	0.20	10.92	0.65	15.22	0.42
구분	2017		2018		2019		평균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징수실적 및 비중	203.15	3.75	269.86	4.97	173.76	3.18	215.59	3.96
증가율	-		32.84		-36.0		-1.38%	

주: 1. 증가율은 (당해년도 - 전년도)/전년도 × 100으로 계산

2. 징수실적 비중은 징수실적/지정금액 × 100으로 계산

3. 평균은 5개년 증가율 및 비중의 평균값임

자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 2020~2022년 3개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금액은 10.52억~12.10억 원이었으며, 기업 수 비중을 사용한 3개년 평균 면제금액은 10.56억원, 매출액 비중을 사용한 3개년 평균 면제액은 12.05억원임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 및 징수실적은 일정비율로 증가하지 않으므로, 5개년 평균금액을 2020년 기준으로 산정하되 3개년만 추정하였음

○ 현행기준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추정된 조세지출규모(연평균 10.56억~12.05억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의 분석보다 좀 더 현행 규정에 근사한 수치라고 볼 수 있음

<표 V-9>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세수효과 추정: 과점주주 및 법인세

(단위: 억원, %)

연도	2020	2021	2022	합계	평균
지정금액	5,439.15	5,461.99	5,484.93	16,386.08	5,462.03
징수실적	215.59	216.29	217.20	648.89	216.30
기업 수 비중 면제금액	10.52	10.56	10.60	31.67	10.56
매출액 비중 면제금액	12.01	12.05	12.10	36.14	12.05

주: 1. 지정금액: 2017~2019년 3개년 평균금액을 2020년 금액으로 기준하여 평균증가율 0.42%를 적용하여 계산  
 2. 징수금액: 2017~2019년 3개년 평균금액을 2020년 금액으로 기준하여 지정금액 대비 비중 3.96%를 적용하여 계산  
 3. 기업수 비중 면제금액: 징수실적 × 4.88% 비중을 곱한 값임  
 4. 매출액 비중 면제금액: 징수실적 × 5.57% 비중을 곱한 값임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및 각 연도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 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벤처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 세수효과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법인세 감면규정 존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정책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특성은 창업초창기 및 초기성장기의 10년 이내의 벤처기업이므로 「조특법」 제6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수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현행기준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추정된 조세지출 규모(연평균 5.26억~6.05억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의 분석보다 좀 더 현행 규정에 근사한 수치라고 볼 수 있음

<표 V-10>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세수효과 추정: 「조특법」 제6조 반영

(단위: 억원, %)

연도	2020	2021	2022	합계	평균
지정금액	5,439.15	5,461.99	5,484.93	16,386.08	5,462.03
징수실적	215.59	216.29	217.20	648.89	216.30
기업 수 비중 면제금액	10.52	10.56	10.60	31.67	10.56
감면적용	5.26	5.28	5.30	15.84	5.28
매출액 비중 면제금액	12.01	12.05	12.10	36.14	12.05
감면적용	6.01	6.03	6.05	18.07	6.03

주: 1. 지정금액: 2017~2019년 3개년 평균금액을 2020년 금액으로 기준하여 평균증가율 0.42%를 적용하여 계산  
 2. 징수금액: 2017~2019년 3개년 평균금액을 2020년 금액으로 기준하여 지정금액 대비 비중 3.96%를 적용하여 계산  
 3. 기업 수 비중 면제금액: 징수실적 × 4.88% 비중을 곱한 값임, 감면적용: 면제금액 × 50%  
 4. 매출액 비중 면제금액: 징수실적 × 5.57% 비중을 곱한 값임, 감면적용: 면제금액 × 50%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및 각 연도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 2. 설문조사를 통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기업의 특성 분석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는 벤처기업 재창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사항으로 2018년에 신설되어 시행 중인 제도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벤처기업에 대한 재무자료 및 세무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며, 벤처기업에 대한 자료 분석은 중소기업벤처부의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보고서 밖에 없음
- 현 제도에서의 정책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부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 수혜대상자 설정의 적절성에 대해 파악하고 향후 수혜대상자 확대 및 제도 요건 완화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가. 조사 설계

- 본 조사는 벤처기업 100개사, 대기업 및 중소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함

<표 V-11> 설문 조사 설계 개요

구분	벤처기업	대기업 및 중소기업
조사 대상	벤처인 기업공시 대상 기업	Kis-Value 과점주주 기업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이메일, Fax 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이메일, Fax 조사
표본 수	100명	100명
조사 기간	2020년 5월 8일~6월 1일	2020년 5월 8일~6월 1일
조사 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자료: 설문조사

## 나. 조사 내용

- 본 조사는 창업가 특성, 지분구조, 재무구조,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성,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정책 인식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을 구성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V-12>와 같음

<표 V-12> 조사 세부 항목

구분	세부 항목
창업가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대표이사와의 동일성</li> <li>• 성별, 연령, 학력</li> <li>• 창업 이전 근무지 및 관련 분야 실무경험</li> <li>• 과거 창업 경험(성공 또는 실패경험 횟수)</li> <li>• 창업 방식</li> <li>• 창업 당시의 목표시장과 현재의 목표시장</li> </ul>
지분구조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경영체제 유형</li> <li>• 주주별 지분율</li> <li>• 최대주주 및 과점주주 현황</li> </ul>
재무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재무상대표 및 손익계산서</li> <li>• 정부 정책지원 수혜 경험</li> <li>• 신규 자금조달 방법</li> </ul>
기업의 경쟁력 및 성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현황</li> <li>• 제품 및 서비스 구조</li> <li>• 국내 및 세계 기술력 비교</li> <li>• 글로벌 경쟁력</li> <li>• 장기적 성장 전망성</li> </ul>
조세정책 인식 및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지원제도 인지도</li> <li>• 조세지원제도 인지도</li> <li>• 정책지원자금, 세제지원 및 기타 정책지원 수혜 경험</li> <li>•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세법규정 고려 정도</li> <li>•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현황</li> <li>•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현황</li> </ul>

자료: 설문조사

## 다. 응답기업 특성

□ 본 설문조사 응답기업 특성은 <표 V-13>과 같음

<표 V-13> 응답기업 특성

(단위: 개소)

구분		벤처기업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전체		100	100
업종	1차 산업	3	4
	제조업	55	29
	서비스업	42	67
상시 종업원 수	10인 미만	33	30
	10~20인 미만	23	13
	20~50인 미만	34	22
	50인 이상	10	35
상장시장	상장	2	1
	비상장	98	99
설립연도	2000년대 이전	16	41
	2000년대	47	30
	2010년대	37	29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2	2
	초기성장기	17	9
	고도성장기	26	14
	성숙기	49	66
	쇠퇴기	6	9

자료: 설문조사

## 라. 설문조사 결과

### 1) 창업가 특성

□ 현 대표이사가 창업자인지 확인한 결과 벤처기업의 82.0%,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45.0%가 ‘그렇다’고 응답함

- 설문응답 대상 벤처기업이 제조업, 20~50인의 종업원 규모, 2000년대 설립 및 성숙기인 경우 이에 해당함

- 창업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벤처기업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대졸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벤처기업에서 석사 및 박사 출신 비율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창업자의 학력이 대졸 및 전문학사인 경우 전공을 파악한 결과 벤처기업은 공학(엔지니어) 비율이 55.4%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경영/경제학 비율이 49.3%로 가장 많았음

<표 V-14> 창업자 학력

(단위: %)

구분		벤처기업	대기업 및 중소기업
학력	박사	12.0	4.0
	석사	16.0	12.0
	대졸	50.0	71.0
	전문학사	6.0	2.0
	고졸	15.0	9.0
	중졸 이하	1.0	2.0

자료: 설문조사

- 벤처기업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자의 이전 근무지를 살펴본 결과 두 기업 유형 모두 일반기업에서 근무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 당시 창업자의 현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파악한 결과 벤처기업은 평균 10.2년,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평균 7.6년 경험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현재 기업을 창업하기 이전에 창업 경험이 있는지 파악한 결과, 벤처기업은 20.0%,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28.0%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기업이 첫 창업인 응답기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과거 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 성공과 실패 횟수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벤처기업은 성공경험이 평균 0.88회, 실패 경험이 평균 0.25회로 나타남
  -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의 성공경험은 평균 1.32회로 벤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임
- 2019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성공 경험인 평균 1.4회에 비해 설문조사 응답대상 벤처기업의 성공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V-15> 과거 창업 경험: 벤처기업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수	과거 창업 경험		결과 및 횟수 (base: 과거 창업 경험 있음)		
		있음	없음	성공	실패	
전체	(100)	20.0	80.0	0.88	0.25	
업종	1차 산업	(3)	0.0	100.0	-	-
	제조업	(55)	21.8	78.2	1.00	0.20
	서비스업	(42)	19.0	81.0	0.67	0.33
상시 종업원 수	10인 미만	(33)	12.1	87.9	1.00	0.00
	10~20인 미만	(23)	26.1	73.9	0.80	0.20
	20~50인 미만	(34)	26.5	73.5	0.89	0.33
	50인 이상	(10)	10.0	90.0	1.00	0.00
상장시장	상장	(2)	0.0	100.0	-	-
	비상장	(98)	20.4	79.6	0.88	0.25
설립연도	2000년대 이전	(16)	6.3	93.8	1.00	0.00
	2000년대	(47)	23.4	76.6	0.80	0.30
	2010년대	(37)	21.6	78.4	1.00	0.20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78)	24.4	75.6	0.88	0.25
	아니오	(22)	4.5	95.5	-	-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2)	0.0	100.0	-	-
	초기성장기	(17)	23.5	76.5	1.00	0.00
	고도성장기	(26)	26.9	73.1	0.71	0.43
	성숙기	(49)	16.3	83.7	1.00	0.14
	쇠퇴기	(6)	16.7	83.3	1.00	0.00

자료: 설문조사

## 2) 창업 방식

- 현재 기업의 창업 유형으로 ‘창업자가 독자적으로 창업’한 비율이 벤처기업 89.0%,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76.0%로 가장 많았음
- 그 외에 벤처기업은 타 기업의 분사 또는 계열사 형식으로 창업한 비율이 7.0%, 국가연구소, 대학교 등에서 창업보육 과정을 거쳐 창업한 경우가 4.0%로 나타남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타 기업의 분사 또는 계열사 형식으로 창업한 비율이 24.0%로 벤처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벤처기업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단독창업 형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각 84.0%, 79.0%)
  - 공동 및 팀 창업한 경우는 평균 창업 멤버 수가 벤처기업은 3.88명,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5.19명으로 분석되었음
  - 공동창업자의 주요역할로 벤처기업은 ‘기술개발’과 ‘영업/마케팅’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영업/마케팅’과 ‘관리’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V-16> 단독 및 공동작업 형태(벤처기업)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단독/공동 여부		창업 멤버 수 (base: 공동 및 팀 창업)	
		창업자 단독창업	공동 및 팀 창업		
전체	(100)	84.0	16.0	3.88	
업종	1차 산업	(3)	33.3	66.7	5.50
	제조업	(55)	92.7	7.3	2.00
	서비스업	(42)	76.2	23.8	4.30
상시 종업원 수	10인 미만	(33)	87.9	12.1	3.50
	10~20인 미만	(23)	82.6	17.4	2.00
	20~50인 미만	(34)	88.2	11.8	2.50
	50인 이상	(10)	60.0	40.0	7.50
상장시장	상장	(2)	50.0	50.0	2.00
	비상장	(98)	84.7	15.3	4.00
설립연도	2000년대 이전	(16)	100.0	0.0	-
	2000년대	(47)	87.2	12.8	2.33
	2010년대	(37)	73.0	27.0	4.80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2)	100.0	0.0	-
	초기성장기	(17)	76.5	23.5	8.25
	고도성장기	(26)	73.1	26.9	2.00
	성숙기	(49)	91.8	8.2	2.50
	쇠퇴기	(6)	83.3	16.7	5.00

자료: 설문조사

- 벤처기업은 창업 당시 국내 시장을 목표로 한 비율이 56.0%에서 현재는 38.0%로 감소한 반면, 국내+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는 비율이 41.0%에서 60.0%로 증가함
  -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역시 창업 당시 국내 시장을 목표로 한 비율이 69.0%에서 현재는 56.0%로 감소하였고, 국내+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는 비율은 28.0%에서 42.0%로 증가함

<표 V-17> 창업 당시 및 현재의 목표시장

(단위: %)

구분	사례수	창업 당시 목표시장			현재 목표시장		
		국내	해외	국내+해외	국내	해외	국내+해외
벤처기업	(100)	56.0	3.0	41.0	38.0	2.0	60.0
대기업 및 중소기업	(100)	69.0	3.0	28.0	56.0	2.0	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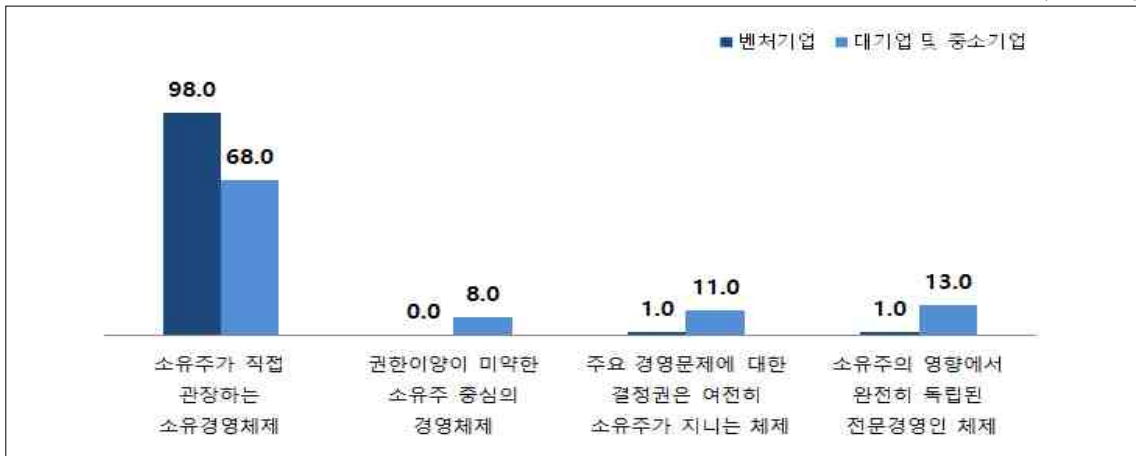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 3) 지분구조 특성

- 현재 기업의 경영체제 유형을 파악한 결과, 벤처기업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소유주가 직접 관장하는 소유경영체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특히 벤처기업에서의 그 비율이 98.0%로 압도적으로 많았음
  -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체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에 비해 많았으며, 소유주의 영향에서 완전히 독립된 전문경영인 체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13.0%로 나타남

[그림 V-1] 기업 경영체제

(단위: %)



자료: 설문조사

<표 V-18> 기업 경영체제(벤처기업)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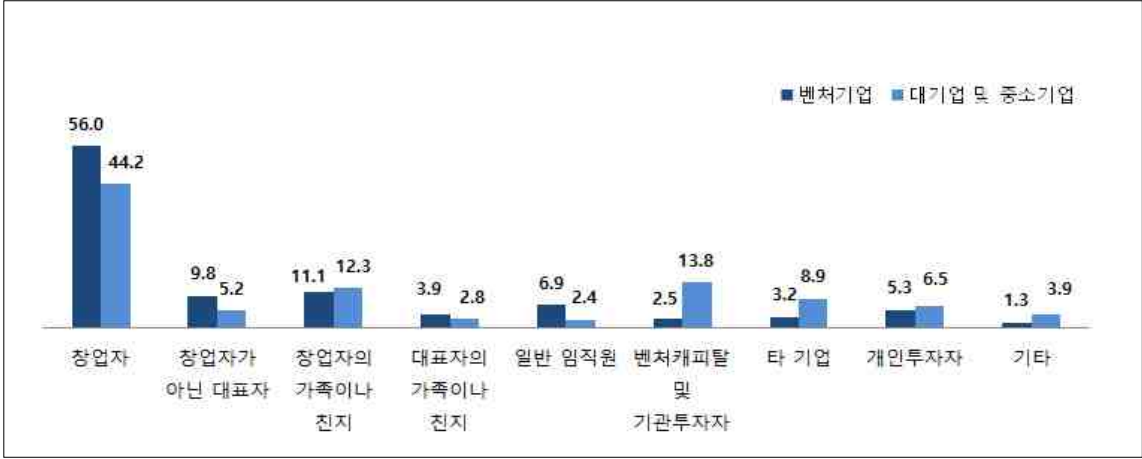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소유주가 직접 관장하는 소유 경영체제	권한이양이 미약한 소유주 중심의 경영체제	주요 경영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여전히 소유주가 지니는 체제	소유주의 영향에서 완전히 독립된 전문경영인 체제	
전체	(100)	68.0	8.0	11.0	13.0	
업종	1차 산업	(4)	75.0	0.0	25.0	0.0
	제조업	(29)	75.9	6.9	10.3	6.9
	서비스업	(67)	64.2	9.0	10.4	16.4
상시 종업원 수	10인 미만	(30)	66.7	3.3	6.7	23.3
	10~20인 미만	(13)	69.2	7.7	7.7	15.4
	20~50인 미만	(22)	72.7	18.2	4.5	4.5
	50인 이상	(35)	65.7	5.7	20.0	8.6
상장시장	상장	(1)	100.0	0.0	0.0	0.0
	비상장	(99)	67.7	8.1	11.1	13.1
설립연도	2000년대 이전	(41)	65.9	9.8	17.1	7.3
	2000년대	(30)	70.0	10.0	10.0	10.0
	2010년대	(29)	69.0	3.4	3.4	24.1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8)	87.5	0.0	12.5	0.0
	아니오	(92)	66.3	8.7	10.9	14.1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2)	100.0	0.0	0.0	0.0
	초기성장기	(9)	55.6	11.1	11.1	22.2
	고도성장기	(14)	92.9	0.0	7.1	0.0
	성숙기	(66)	63.6	9.1	13.6	13.6
	쇠퇴기	(9)	66.7	11.1	0.0	22.2

자료: 설문조사

- 벤처기업은 창업자의 지분율이 56.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창업자의 가족이나 친지(11.1%), 창업자가 아닌 대표자(9.8%), 일반 임직원(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역시 창업자의 지분율이 44.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벤처캐피탈 및 기관투자자(13.8%), 창업자의 가족이나 친지(12.3%), 타 기업(8.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V-2] 주주별 지분율

(단위: %)



자료: 설문조사

<표 V-19> 주주별 지분율(벤처기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창업자	창업자가 아닌 대표자	창업자의 가족이나 친지	대표자의 가족이나 친지	일반 임직원	벤처캐피탈 및 기관투자자	타 기업	개인투자자	기타	
전체	(88)	56.0	9.8	11.1	3.9	6.9	2.5	3.2	5.3	1.3	
업종	1차 산업	(3)	41.4	17.4	0.0	0.0	8.3	14.0	7.9	10.9	0.0
	제조업	(48)	57.1	9.8	12.8	3.3	7.0	3.0	2.4	2.4	2.3
	서비스업	(37)	55.7	9.1	9.7	4.9	6.8	0.9	3.9	8.6	0.3
종업원 수	10인 미만	(30)	49.9	13.1	13.5	8.2	6.0	2.2	0.6	5.3	1.3
	10~20인 미만	(18)	66.7	7.4	11.6	1.7	5.4	1.7	2.8	1.1	1.7
	20~50인 미만	(31)	63.7	6.2	10.6	2.0	9.6	1.0	2.2	3.5	1.3
	50인 이상	(9)	28.2	15.7	3.5	0.0	4.0	10.6	16.9	19.9	1.2
상장시장	상장	(2)	11.2	0.0	0.7	0.0	0.0	2.5	0.0	85.4	0.2
	비상장	(86)	57.0	10.0	11.3	4.0	7.1	2.5	3.3	3.4	1.4
설립연도	2000년대 이전	(14)	69.2	10.7	10.3	2.5	3.8	0.0	0.3	2.6	0.7
	2000년대	(40)	51.8	10.3	10.6	5.1	8.8	1.5	2.7	7.4	1.7
	2010년대	(34)	55.4	8.7	11.9	2.9	6.1	4.7	5.1	4.0	1.1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2)	30.0	0.0	17.5	0.0	19.0	0.0	0.0	33.5	0.0
	초기성장기	(14)	45.9	5.8	9.8	4.3	1.7	9.9	10.0	9.8	2.8
	고도성장기	(24)	62.3	8.5	6.3	2.9	10.1	3.3	3.1	3.0	0.4
	성숙기	(44)	58.2	10.7	14.8	4.1	6.1	0.1	1.6	2.9	1.6
	쇠퇴기	(4)	42.0	25.3	0.0	7.5	10.0	0.0	0.0	15.3	0.0

자료: 설문조사

- 벤처기업의 70.0%,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78.0%는 최대주주가 있다고 응답함
  - 최대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이하 과점주주)는 벤처기업의 38.0%,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62.0%로 나타남

<표 V-20> 최대주주 및 과점주주 여부(종합)

(단위: %)

구분	사례수	최대주주 여부		과점주주 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벤처기업	(100)	70.0	30.0	38.0	62.0
대기업 및 중소기업	(100)	78.0	22.0	62.0	38.0

자료: 설문조사

- 벤처기업이 과점주주인 이유로 ‘기업의 의사결정’이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장기적인 기업목표 수립’(21.1%),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어려움’(1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V-21> 벤처기업의 과점주주 이유

(단위: %)

구분	사례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어려움	기업의 의사결정	장기적인 기업목표 수립	모름/무응답
벤처기업	(38)	18.4	44.7	21.1	15.8

자료: 설문조사

- 반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의 합이 50% 이하인 이유로 기타 의견을 제외하면 ‘채무의 출자전환’(15.8%),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7.9%)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V-22>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과점주주 비해당 이유

(단위: %)

구분	사례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코스피 및 코스닥상장	채무의 출자전환	기타	모름/무응답
대기업 및 중소기업	(38)	2.6	7.9	2.6	15.8	55.3	15.8

자료: 설문조사

□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의 합이 50% 이하라서 겪는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6.8%로 가장 높았음

<표 V-23>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과점주주 비해당으로 인한 어려움

(단위: %)

구분	사례수	기업의 의사결정	장기적인 기업목표 수립	전혀 어려움이 없음
벤처기업	(38)	10.5	2.6	86.8

자료: 설문조사

<표 V-24> 최대주주 및 과점주주 여부(벤처기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최대주주 여부		과점주주 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100)	70.0	30.0	38.0	62.0	
업종	1차 산업	(3)	66.7	33.3	33.3	66.7
	제조업	(55)	63.6	36.4	36.4	63.6
	서비스업	(42)	78.6	21.4	40.5	59.5
상시 종업원 수	10인 미만	(33)	72.7	27.3	57.6	42.4
	10~20인 미만	(23)	56.5	43.5	26.1	73.9
	20~50인 미만	(34)	73.5	26.5	35.3	64.7
	50인 이상	(10)	80.0	20.0	10.0	90.0
상장시장	상장	(2)	100.0	0.0	0.0	100.0
	비상장	(98)	69.4	30.6	38.8	61.2
설립연도	2000년대 이전	(16)	62.5	37.5	50.0	50.0
	2000년대	(47)	59.6	40.4	27.7	72.3
	2010년대	(37)	86.5	13.5	45.9	54.1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2)	50.0	50.0	50.0	50.0
	초기성장기	(17)	88.2	11.8	52.9	47.1
	고도성장기	(26)	73.1	26.9	34.6	65.4
	성숙기	(49)	65.3	34.7	36.7	63.3
	쇠퇴기	(6)	50.0	50.0	16.7	83.3

자료: 설문조사

- 최대주주 유형을 파악한 결과, 벤처기업은 대표이사(54.3%)와 중견 및 중소기업(22.9%)에 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외 유형은 10% 미만으로 나타남
-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역시 대표이사(35.7%)와 중견 및 중소기업(14.1%)에 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V-25〉 최대주주 유형(벤처기업)

(단위: 명,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법인주주						개인주주			
		출자 총액 제한 기업 집단 계열사	상호 출자 및 채무 보증 제한 기업 집단 계열사	중견 및 중소 기업	지주 회사	영리 법인	공공 부문	대표 이사	대표 이사 외 임원	그 외	
전체	(70)	4.3	1.4	22.9	2.9	4.3	1.4	54.3	8.6	2.9	
업종	1차 산업	(2)	0.0	0.0	0.0	0.0	0.0	100.0	0.0	0.0	
	제조업	(35)	8.6	2.9	25.7	2.9	5.7	2.9	48.6	8.6	2.9
	서비스업	(33)	0.0	0.0	21.2	3.0	3.0	0.0	57.6	9.1	3.0
상시 종업원 수	10인 미만	(24)	8.3	4.2	25.0	0.0	4.2	4.2	45.8	8.3	4.2
	10~20인 미만	(13)	7.7	0.0	23.1	7.7	7.7	0.0	61.5	0.0	0.0
	20~50인 미만	(25)	0.0	0.0	28.0	0.0	0.0	0.0	48.0	8.0	0.0
	50인 이상	(8)	0.0	0.0	0.0	12.5	12.5	0.0	87.5	25.0	12.5
상장시장	상장	(2)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비상장	(68)	4.4	1.5	23.5	2.9	4.4	1.5	52.9	8.8	2.9
설립연도	2000년대 이전	(10)	0.0	0.0	40.0	0.0	0.0	0.0	50.0	20.0	10.0
	2000년대	(28)	3.6	0.0	17.9	0.0	0.0	0.0	53.6	10.7	3.6
	2010년대	(32)	6.3	3.1	21.9	6.3	9.4	3.1	56.3	3.1	0.0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초기성장기	(15)	6.7	6.7	13.3	13.3	13.3	6.7	66.7	6.7	0.0
	고도성장기	(19)	0.0	0.0	26.3	0.0	5.3	0.0	57.9	0.0	0.0
	성숙기	(32)	6.3	0.0	25.0	0.0	0.0	0.0	43.8	12.5	3.1
	쇠퇴기	(3)	0.0	0.0	0.0	0.0	0.0	0.0	100.0	33.3	33.3

자료: 설문조사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유형으로 벤처기업은 중견 및 중소기업(19.4%), 대표이사 외 임원(11.1%), 그 외 개인주주(13.9%)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그 외 개인주주에 해당하는 비율이 26.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대표이사 외 임원(13.3%), 중견 및 중소기업(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V-26〉 특수관계 주주 유형(벤처기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법인주주			개인주주			
		출자 총액 제한 기업 집단 계열사	중견 및 중소기업	영리 법인	귀사의 대표 이사	귀사의 대표 이사 외 임원	귀사의 직원	그 외
벤처기업	(36)	2.8	19.4	5.6	8.3	11.1	5.6	13.9
대기업 및 중소기업	(30)	0.0	10.0	3.3	6.7	13.3	3.3	26.7

주: 모름/무응답은 표에서 제외함(벤처기업 55.6%, 대기업 및 중소기업 60.0%)  
 자료: 설문조사

#### 4) 재무구조 특성

- 2019년도 12월말 기준 벤처기업의 평균 자산총계는 약 258억 9천만원,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약 435억 8천만원으로 조사되었음

〈표 V-27〉 재무상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례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2018년도	2019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벤처기업	(100)	31,994.9	25,890.8	13,038.2	8,441.7	19,140.4	17,571.4
대기업 및 중소기업	(100)	39,473.5	43,579.4	19,297.4	20,664.1	20,176.2	23,242.6

자료: 설문조사

- 벤처기업의 2019년 평균 매출액은 약 120억원으로 2018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2019년 평균 매출액은 약 199억원으로 2018년에 비해 소폭 증가함

<표 V-28> 손익계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금융비용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법인세 부담액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벤처 기업	30,521.3	12,099.8	127.7	-19.4	107.8	185.6	30.8	-323.6	77.9	92.8
대기업 및 중소 기업	18,582.8	19,937.6	2,639.4	2,999.9	2,884.3	3,418.8	1,903.7	2,868.9	5,241.9	311.3

자료: 설문조사

- 2019년에 정부 정책지원을 받은 기업은 벤처기업의 38.0%,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15.0%로 응답되었음
  - 벤처기업은 R&D자금, 융자, 보증서 지원을 받은 비율이 50%대로 유사한 반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융자를 받은 비율이 80.0%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보증서 지원(33.3%), R&D자금(20.0%) 순으로 나타남

<표 V-29> 정부 정책지원 수혜 현황

(단위: %)

구분	사례수	2019년 정부 정책지원 경험 여부		세부 자금별 혜택 경험 (base: 정책지원 경험기업)					
				R&D자금		융자		보증서 지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벤처기업	(100)	38.0	62.0	52.6	47.4	57.9	42.1	55.3	44.7
대기업 및 중소기업	(100)	15.0	85.0	20.0	80.0	80.0	20.0	33.3	66.7

자료: 설문조사

-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업의 신규 자금조달 방법 및 비율을 파악한 결과, 벤처기업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은행 등 일반금융을 통해 조달받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정부정책지원금을 활용하는 비율이 벤처기업은 23.8%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10.6%) 대비 높은 편임
  - IPO, 캐피탈/엔젤투자, 회사채 발행은 벤처기업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선호하는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남

<표 V-30> 신규 자금조달 방법 및 비율

(단위: %)

구분	사례수	IPO	캐피탈/엔젤투자	회사채 발행	정부정책 지원금	은행 등 일반금융	기타
벤처기업	(77)	1.0	0.5	1.6	23.8	62.5	10.5
대기업 및 중소기업	(64)	1.6	0.2	3.2	10.6	69.3	15.2

자료: 설문조사

### 5) 기업의 경쟁력 및 성장성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벤처기업의 65.0%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25.0%)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66.0%는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 연구개발 인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벤처기업은 2~3개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주력하는 비율이 44.0%, 4개 이상 복수의 제품 및 서비스 다각화를 추구하는 비율도 42.0%로 나타난 반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하나의 대표 제품 또는 서비스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50.0%로 나타남
- 국내 기술력과 비교했을 때 벤처기업은 국내 유일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11.0%, 국내 최고 수준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2.0%로 나타남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벤처기업에 비해 그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남

- 세계 기술력과 비교했을 때 벤처기업의 2.0%만이 세계 유일한 기술이라고 응답했고, 20.0%는 세계 최고 수준과 동일하다고 응답하였음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세계 기술력 비교 응답은 벤처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 V-31> 국내 및 세계 기술력 비교

(단위: %)

구분	사례수	국내 기술력 비교					세계 기술력 비교				
		유일 기술	최고 수준과 동일	약간 미흡	미흡	경쟁 열세	유일 기술	최고 수준과 동일	약간 미흡	미흡	경쟁 열세
벤처기업	(100)	11.0	42.0	36.0	9.0	2.0	2.0	20.0	54.0	19.0	5.0
대기업 및 중소기업	(100)	4.0	36.0	49.0	8.0	3.0	3.0	19.0	61.0	9.0	8.0

자료: 설문조사

- 동종업계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과 분야별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분야에서 보통 이상(3점 이상)으로 나타남<sup>21)</sup>
  - 벤처기업은 기술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3.5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마케팅 경쟁력을 2.9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함
  -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역시 기술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3.4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마케팅 경쟁력을 3.0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함

<표 V-32> 글로벌 경쟁력

(단위: 점)

구분	사례수	기술 경쟁력	가격 경쟁력	디자인 경쟁력	품질 경쟁력	조직관리 경쟁력	마케팅 경쟁력
벤처기업	(100)	3.5	3.4	3.2	3.5	3.2	2.9
대기업 및 중소기업	(100)	3.4	3.22	3.1	3.4	3.2	3.0

자료: 설문조사

21) 점수 환산: ① 매우 부정적(1점) ② 부정적(2점) ③ 보통(3점) ④ 긍정적(4점) ⑤ 매우 긍정적(5점)

- 벤처기업의 56.0%,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44.0%는 장기적인 성장 전망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장기적 성장 전망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벤처기업의 4.0%,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11.0%에 그침

<표 V-33> 장기적 성장 전망성

(단위: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종합	
							부정적	긍정적
벤처기업	(100)	1.0	3.0	40.0	47.0	9.0	4.0	56.0
대기업 및 중소기업	(100)	0.0	11.0	45.0	31.0	13.0	11.0	44.0

자료: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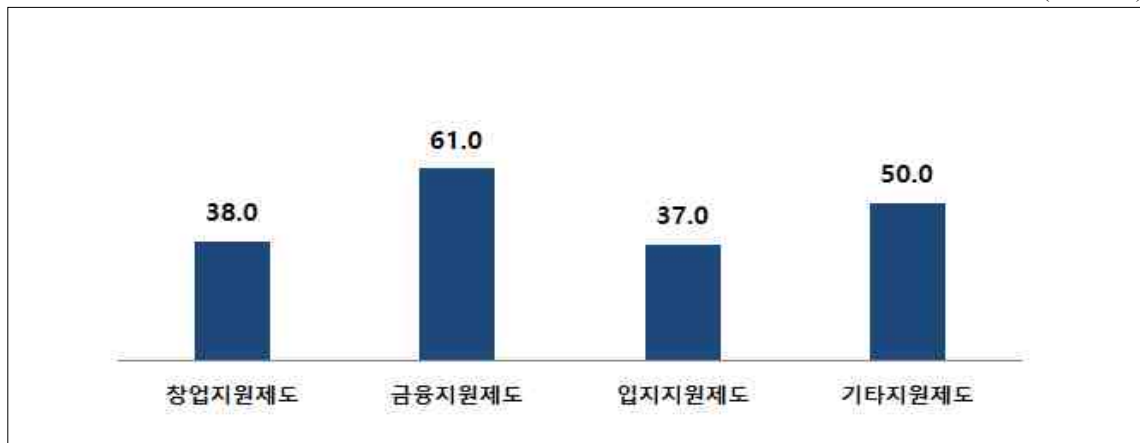
## 6) 조세정책 인식 및 현황

### 가) 정책지원제도 인지도

- 벤처투자기업 대상의 정책지원제도에 대한 인지수준을 파악한 결과, 금융지원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1.0%로 가장 높고, 이어서 기타지원제도(50.0%), 창업지원제도(38.0%), 입지지원제도(37.0%) 순으로 나타남
  - 네 가지 유형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13% 내외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타남

[그림 V-3] 벤처투자기업 대상 정책지원제도 인지비율

(단위: %)



자료: 설문조사

<표 V-34> 벤처투자기업 대상 정책지원제도 인지도(종합)

(단위: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종합	
						비인지	인지
창업지원제도	(100)	13.0	49.0	33.0	5.0	62.0	38.0
금융지원제도	(100)	12.0	27.0	54.0	7.0	39.0	61.0
입지지원제도	(100)	15.0	48.0	33.0	4.0	63.0	37.0
기타지원제도	(100)	13.0	37.0	46.0	4.0	50.0	50.0

자료: 설문조사

<표 V-35> 벤처투자기업 대상 정책지원제도 인지비율(벤처기업)

(단위: %)

구분		사례수	창업지원 제도	금융지원 제도	입지지원 제도	기타지원 제도
전체		(100)	38.0	61.0	37.0	50.0
업종	1차 산업	(3)	100.0	100.0	66.7	66.7
	제조업	(55)	38.2	60.0	32.7	47.3
	서비스업	(42)	33.3	59.5	40.5	52.4
상시 종업원 수	10인 미만	(33)	42.4	63.6	42.4	48.5
	10~20인 미만	(23)	34.8	56.5	21.7	43.5
	20~50인 미만	(34)	32.4	55.9	32.4	50.0
	50인 이상	(10)	50.0	80.0	70.0	70.0
상장시장	상장	(2)	0.0	50.0	0.0	0.0
	비상장	(98)	38.8	61.2	37.8	51.0
설립연도	2000년대 이전	(16)	43.8	62.5	37.5	43.8
	2000년대	(47)	34.0	57.4	31.9	51.1
	2010년대	(37)	40.5	64.9	43.2	51.4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2)	50.0	50.0	50.0	50.0
	초기성장기	(17)	47.1	64.7	47.1	47.1
	고도성장기	(26)	30.8	65.4	34.6	57.7
	성숙기	(49)	34.7	59.2	32.7	49.0
	쇠퇴기	(6)	66.7	50.0	50.0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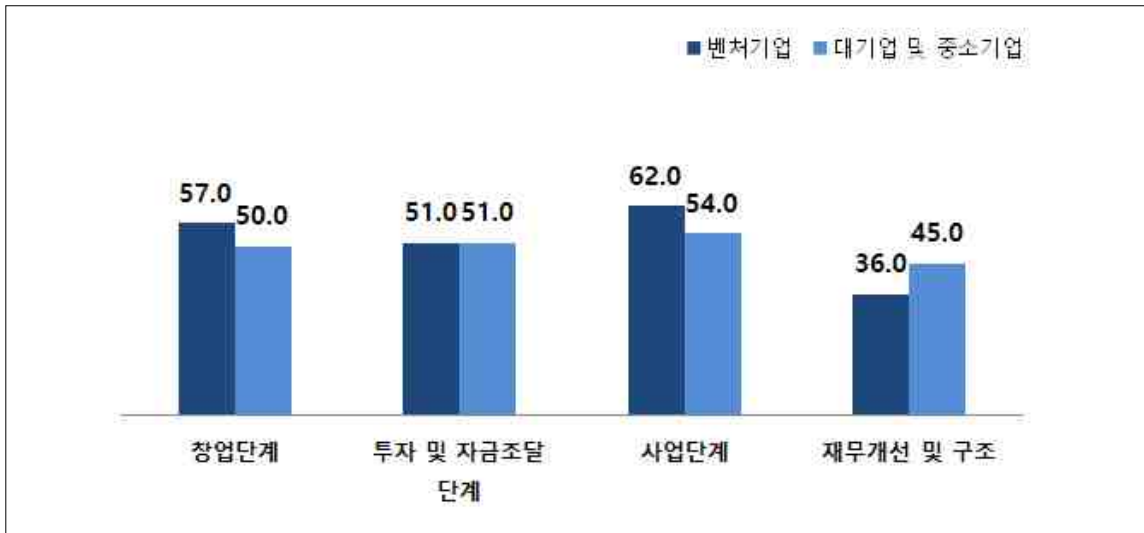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나) 벤처 및 중소기업 대상 조세지원제도 인지도

- 벤처 및 중소기업 대상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수준을 파악한 결과, 벤처기업은 사업단계의 조세지원제도 인지 비율이 62.0%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창업단계 조세지원제도(57.0%), 투자 및 자금조달 단계 조세지원제도(51.0%), 재무개선 및 구조 조세지원제도(36.0%) 순으로 나타남
-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역시 사업단계의 조세지원제도 인지비율이 54.0%로 가장 높았으나 벤처기업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 반면 재무개선 및 구조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비율은(45.0%) 벤처기업에 비해 높은 편임

[그림 V-4] 벤처 및 중소기업 대상 조세지원제도 인지비율

(단위: %)



자료: 설문조사

<표 V-36> 벤처 및 중소기업 대상 조세지원제도 인지비율(종합)

(단위: %)

구분	사례수	창업단계	투자 및 자금조달 단계	사업단계	재무개선 및 구조
벤처기업	(100)	57.0	51.0	62.0	36.0
대기업 및 중소기업	(100)	50.0	51.0	54.0	45.0

주: 인지비율: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매우 잘 알고 있다

자료: 설문조사

<표 V-37> 벤처 및 중소기업 대상 조세지원제도 인지비율(벤처기업)

(단위: %)

구분		사례수	창업단계	투자 및 자금조달 단계	사업단계	재무개선 및 구조
전체		(100)	57.0	51.0	62.0	36.0
업종	1차 산업	(3)	66.7	66.7	66.7	66.7
	제조업	(55)	54.5	49.1	52.7	29.1
	서비스업	(42)	59.5	52.4	73.8	42.9
상시 종업원 수	10인 미만	(33)	57.6	48.5	51.5	39.4
	10~20인 미만	(23)	56.5	47.8	69.6	34.8
	20~50인 미만	(34)	55.9	50.0	61.8	29.4
	50인 이상	(10)	60.0	70.0	80.0	50.0
상장시장	상장	(2)	0.0	50.0	50.0	0.0
	비상장	(98)	58.2	51.0	62.2	36.7
설립연도	2000년대 이전	(16)	43.8	50.0	56.3	37.5
	2000년대	(47)	48.9	46.8	57.4	29.8
	2010년대	(37)	73.0	56.8	70.3	43.2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2)	50.0	50.0	50.0	50.0
	초기성장기	(17)	82.4	70.6	76.5	58.8
	고도성장기	(26)	53.8	50.0	69.2	38.5
	성숙기	(49)	51.0	46.9	57.1	26.5
	쇠퇴기	(6)	50.0	33.3	33.3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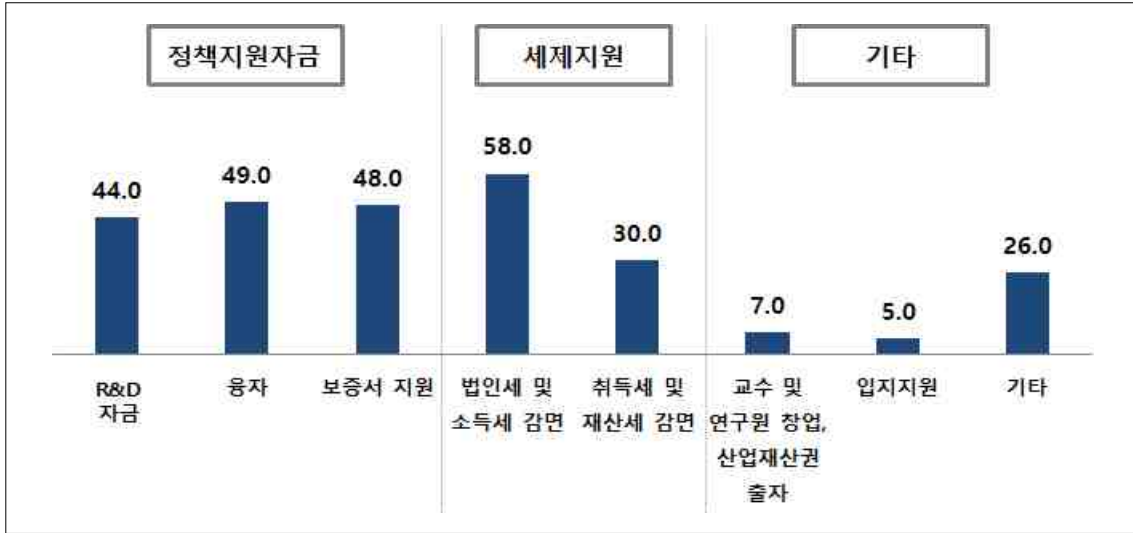
주: 인지비율: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매우 잘 알고 있다  
 자료: 설문조사

#### 다) 벤처기업 대상 정책지원 수혜 경험

-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정책지원자금, 세제지원 및 기타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파악한 결과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경험한 비율이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세제지원 중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30.0%만 경험이 있음
  - R&D자금, 융자, 보증서 지원 등 정책지원자금은 40%대의 비율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특허심사, 기술임치, 마케팅 등 기타 지원은 26.0%의 기업이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교수 및 연구원 창업, 산업재산권 출자는 7.0%, 입지지원은 5.0%에 그쳤음

[그림 V-5] 벤처기업 대상 정책지원 수혜 경험

(단위: %)



자료: 설문조사

<표 V-38> 벤처기업 대상 정책지원 수혜 경험

(단위: %)

구분	사례수	정책지원자금			세제지원		기타		
		R&D 자금	융자	보증서 지원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교수 및 연구원 창업, 산업재산권 출자	입지 지원	기타
전체	(100)	44.0	49.0	48.0	58.0	30.0	7.0	5.0	26.0
업종	1차 산업 (3)	66.7	66.7	66.7	100.0	33.3	0.0	0.0	0.0
	제조업 (55)	43.6	58.2	58.2	52.7	32.7	9.1	0.0	23.6
	서비스업 (42)	42.9	35.7	33.3	61.9	26.2	4.8	11.9	31.0
상시 종업원 수	10인 미만 (33)	42.4	42.4	42.4	48.5	21.2	6.1	6.1	24.2
	10~20인 미만 (23)	39.1	47.8	52.2	52.2	26.1	8.7	4.3	17.4
	20~50인 미만 (34)	38.2	55.9	52.9	61.8	29.4	8.8	2.9	32.4
	50인 이상 (10)	80.0	50.0	40.0	90.0	70.0	0.0	10.0	30.0
상장시장	상장 (2)	100.0	50.0	50.0	100.0	50.0	0.0	0.0	50.0
	비상장 (98)	42.9	49.0	48.0	57.1	29.6	7.1	5.1	25.5
설립연도	2000년대 이전 (16)	56.3	50.0	50.0	31.3	25.0	0.0	0.0	37.5
	2000년대 (47)	38.3	46.8	46.8	57.4	31.9	12.8	8.5	25.5
	2010년대 (37)	45.9	51.4	48.6	70.3	29.7	2.7	2.7	21.6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2)	50.0	0.0	0.0	50.0	50.0	0.0	0.0	50.0
	초기성장기 (17)	76.5	58.8	35.3	64.7	41.2	17.6	17.6	23.5
	고도성장기 (26)	46.2	57.7	57.7	65.4	19.2	0.0	7.7	30.8
	성숙기 (49)	30.6	49.0	49.0	55.1	32.7	8.2	0.0	24.5
	쇠퇴기 (6)	50.0	0.0	50.0	33.3	16.7	0.0	0.0	16.7

자료: 설문조사

라) 경영의사결정에서의 세법규정 및 조세지원제도 고려 수준

- 벤처기업에서 주요 의사결정 시 세법규정을 고려하는지 파악한 결과, 57.0%의 기업이 매우 많이 고려한다고 응답함
  -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에 불과함
  -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주요 의사결정시 사업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고려하는지 파악한 결과, 매우 많이 고려한다는 기업이 18.0%, 약간 고려한다는 기업이 41.0%로 나타남

<표 V-39> 경영의사결정에서의 세법규정 및 조세지원제도 고려 수준

(단위: %)

구분	사례수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약간 고려한다	매우 많이 고려한다	잘 모르겠다
벤처기업	(100)	4.0	28.0	57.0	11.0
대기업 및 중소기업	(100)	15.0	41.0	18.0	15.0

자료: 설문조사

<표 V-40> 경영의사결정에서의 세법규정 고려 수준(벤처기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약간 고려한다	매우 많이 고려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100)	4.0	28.0	57.0	11.0	
업종	1차 산업	(3)	0.0	66.7	33.3	0.0
	제조업	(55)	1.8	27.3	60.0	10.9
	서비스업	(42)	7.1	26.2	54.8	11.9
상시 종업원 수	10인 미만	(33)	3.0	36.4	45.5	15.2
	10~20인 미만	(23)	8.7	26.1	52.2	13.0
	20~50인 미만	(34)	2.9	23.5	64.7	8.8
	50인 이상	(10)	0.0	20.0	80.0	0.0
상장시장	상장	(2)	0.0	0.0	100.0	0.0
	비상장	(98)	4.1	28.6	56.1	11.2
설립연도	2000년대 이전	(16)	0.0	31.3	56.3	12.5
	2000년대	(47)	6.4	27.7	53.2	12.8
	2010년대	(37)	2.7	27.0	62.2	8.1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2)	0.0	50.0	50.0	0.0
	초기성장기	(17)	11.8	35.3	52.9	0.0
	고도성장기	(26)	0.0	30.8	61.5	7.7
	성숙기	(49)	4.1	22.4	57.1	16.3
	쇠퇴기	(6)	0.0	33.3	50.0	16.7

자료: 설문조사

마)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인식 및 현황

- 과점주주 기업을 대상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를 알고 있는지 파악한 결과, 벤처기업의 34.2%,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56.5%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벤처기업에서 본 제도에 대한 비인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V-6]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인지도

(단위: %)



자료: 설문조사

<표 V-4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인지도(종합)

(단위: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어느정도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종합	
						비인지	인지
벤처기업	(38)	13.2	52.6	31.6	2.6	65.8	34.2
대기업 및 중소기업	(62)	9.7	33.9	53.2	3.2	43.5	56.5

자료: 설문조사

<표 V-4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인지도(벤처기업)

(단위: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어느정도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종합		
						비인지	인지	
전체	(38)	13.2	52.6	31.6	2.6	65.8	34.2	
업종	1차 산업	(1)	0.0	100.0	0.0	0.0	100.0	0.0
	제조업	(20)	15.0	50.0	35.0	0.0	65.0	35.0
	서비스업	(17)	11.8	52.9	29.4	5.9	64.7	35.3
상시 종업원 수	10인 미만	(19)	15.8	42.1	42.1	0.0	57.9	42.1
	10~20인 미만	(6)	16.7	66.7	16.7	0.0	83.3	16.7
	20~50인 미만	(12)	8.3	58.3	25.0	8.3	66.7	33.3
	50인 이상	(1)	0.0	100.0	0.0	0.0	100.0	0.0
상장시장	상장	(0)	0.0	0.0	0.0	0.0	0.0	0.0
	비상장	(38)	13.2	52.6	31.6	2.6	65.8	34.2
설립연도	2000년대 이전	(8)	25.0	62.5	12.5	0.0	87.5	12.5
	2000년대	(13)	7.7	61.5	23.1	7.7	69.2	30.8
	2010년대	(17)	11.8	41.2	47.1	0.0	52.9	47.1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0.0	100.0	0.0	0.0	100.0	0.0
	초기성장기	(9)	11.1	22.2	66.7	0.0	33.3	66.7
	고도성장기	(9)	33.3	44.4	22.2	0.0	77.8	22.2
	성숙기	(18)	5.6	72.2	16.7	5.6	77.8	22.2
	쇠퇴기	(1)	0.0	0.0	100.0	0.0	0.0	100.0

자료: 설문조사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신규 자금조달 전략 또는 주주의 지분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세법규정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파악한 결과 59.7%는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40.3%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 기업의 성장단계가 성숙기 이후인 경우 그 이전에 비해 본 규정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표 V-4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신규 자금조달 전략 및 주주 지분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대기업 및 중소기업)

(단위: %)

구분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종합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다	
전체	(62)	6.5	33.9	51.6	8.1	40.3	59.7	
업종	1차 산업	(3)	33.3	0.0	66.7	0.0	33.3	66.7
	제조업	(20)	5.0	35.0	55.0	5.0	40.0	60.0
	서비스업	(39)	5.1	35.9	48.7	10.3	41.0	59.0
상시 종업원 수	10인 미만	(16)	18.8	12.5	56.3	12.5	31.3	68.8
	10~20인 미만	(8)	0.0	50.0	50.0	0.0	50.0	50.0
	20~50인 미만	(15)	6.7	26.7	66.7	0.0	33.3	66.7
	50인 이상	(23)	0.0	47.8	39.1	13.0	47.8	52.2
상장시장	상장	(1)	0.0	0.0	100.0	0.0	0.0	100.0
	비상장	(61)	6.6	34.4	50.8	8.2	41.0	59.0
설립연도	2000년대 이전	(23)	8.7	34.8	43.5	13.0	43.5	56.5
	2000년대	(22)	4.5	31.8	59.1	4.5	36.4	63.6
	2010년대	(17)	5.9	35.3	52.9	5.9	41.2	58.8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0.0	100.0	0.0	0.0	100.0	0.0
	초기성장기	(6)	16.7	33.3	33.3	16.7	50.0	50.0
	고도성장기	(7)	0.0	57.1	42.9	0.0	57.1	42.9
	성숙기	(39)	5.1	33.3	51.3	10.3	38.5	61.5
	쇠퇴기	(9)	11.1	11.1	77.8	0.0	22.2	77.8

자료: 설문조사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폐업 및 재창업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세법규정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파악한 결과 66.1%는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33.9%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 기업의 성장단계가 쇠퇴기인 경우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8.9%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 V-44>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폐업 및 재창업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대기업 및 중소기업)

(단위: %)

구분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종합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다	
전체	(62)	6.5	27.4	58.1	8.1	33.9	66.1	
업종	1차 산업	(3)	33.3	0.0	66.7	0.0	33.3	66.7
	제조업	(20)	5.0	25.0	70.0	0.0	30.0	70.0
	서비스업	(39)	5.1	30.8	51.3	12.8	35.9	64.1
상시 종업원 수	10인 미만	(16)	18.8	18.8	62.5	0.0	37.5	62.5
	10~20인 미만	(8)	0.0	25.0	62.5	12.5	25.0	75.0
	20~50인 미만	(15)	6.7	20.0	73.3	0.0	26.7	73.3
	50인 이상	(23)	0.0	39.1	43.5	17.4	39.1	60.9
상장시장	상장	(1)	0.0	0.0	0.0	100.0	0.0	100.0
	비상장	(61)	6.6	27.9	59.0	6.6	34.4	65.6
설립연도	2000년대 이전	(23)	8.7	34.8	52.2	4.3	43.5	56.5
	2000년대	(22)	4.5	22.7	59.1	13.6	27.3	72.7
	2010년대	(17)	5.9	23.5	64.7	5.9	29.4	70.6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0.0	100.0	0.0	0.0	100.0	0.0
	초기성장기	(6)	16.7	33.3	50.0	0.0	50.0	50.0
	고도성장기	(7)	0.0	42.9	57.1	0.0	42.9	57.1
	성숙기	(39)	5.1	28.2	53.8	12.8	33.3	66.7
	쇠퇴기	(9)	11.1	0.0	88.9	0.0	11.1	88.9

자료: 설문조사

-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세법규정이 기업의 경영 전략 및 출구전략을 방해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53.2%는 방해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46.8%는 방해한다고 응답함
- 기업의 성장단계가 쇠퇴기인 경우에 방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임(66.7%)

〈표 V-45〉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경영전략 및 출구전략 방해 여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단위: %)

구분	사례수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	별로 방해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방해한다	매우 방해한다	종합		
						방해하지 않는다	방해 한다	
전체	(62)	6.5	46.8	43.5	3.2	53.2	46.8	
업종	1차 산업	(3)	33.3	33.3	33.3	0.0	66.7	33.3
	제조업	(20)	10.0	55.0	35.0	0.0	65.0	35.0
	서비스업	(39)	2.6	43.6	48.7	5.1	46.2	53.8
상시 종업원 수	10인 미만	(16)	6.3	43.8	50.0	0.0	50.0	50.0
	10~20인 미만	(8)	0.0	87.5	12.5	0.0	87.5	12.5
	20~50인 미만	(15)	0.0	40.0	60.0	0.0	40.0	60.0
	50인 이상	(23)	13.0	39.1	39.1	8.7	52.2	47.8
상장시장	상장	(1)	0.0	0.0	100.0	0.0	0.0	100.0
	비상장	(61)	6.6	47.5	42.6	3.3	54.1	45.9
설립연도	2000년대 이전	(23)	13.0	43.5	43.5	0.0	56.5	43.5
	2000년대	(22)	4.5	50.0	36.4	9.1	54.5	45.5
	2010년대	(17)	0.0	47.1	52.9	0.0	47.1	52.9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0.0	100.0	0.0	0.0	100.0	0.0
	초기성장기	(6)	0.0	50.0	50.0	0.0	50.0	50.0
	고도성장기	(7)	0.0	71.4	28.6	0.0	71.4	28.6
	성숙기	(39)	10.3	43.6	41.0	5.1	53.8	46.2
	쇠퇴기	(9)	0.0	33.3	66.7	0.0	33.3	66.7

자료: 설문조사

-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된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기존 투자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파악한 결과 59.7%는 그렇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40.3%는 아니라고 응답함

<표 V-46>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로 인한 투자 확대 예상(대기업 및 중소기업)  
(단위: %)

구분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아니다	그렇다	
전체	(62)	4.8	35.5	58.1	1.6	40.3	59.7	
업종	1차 산업	(3)	33.3	33.3	33.3	0.0	66.7	33.3
	제조업	(20)	0.0	30.0	70.0	0.0	30.0	70.0
	서비스업	(39)	5.1	38.5	53.8	2.6	43.6	56.4
상시 종업원 수	10인 미만	(16)	6.3	43.8	50.0	0.0	50.0	50.0
	10~20인 미만	(8)	12.5	50.0	37.5	0.0	62.5	37.5
	20~50인 미만	(15)	0.0	13.3	86.7	0.0	13.3	86.7
	50인 이상	(23)	4.3	39.1	52.2	4.3	43.5	56.5
상장시장	상장	(1)	0.0	0.0	100.0	0.0	0.0	100.0
	비상장	(61)	4.9	36.1	57.4	1.6	41.0	59.0
설립연도	2000년대 이전	(23)	4.3	39.1	56.5	0.0	43.5	56.5
	2000년대	(22)	9.1	36.4	50.0	4.5	45.5	54.5
	2010년대	(17)	0.0	29.4	70.6	0.0	29.4	70.6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0.0	0.0	100.0	0.0	0.0	100.0
	초기성장기	(6)	0.0	100.0	0.0	0.0	100.0	0.0
	고도성장기	(7)	0.0	42.9	42.9	14.3	42.9	57.1
	성숙기	(39)	7.7	33.3	59.0	0.0	41.0	59.0
	쇠퇴기	(9)	0.0	0.0	100.0	0.0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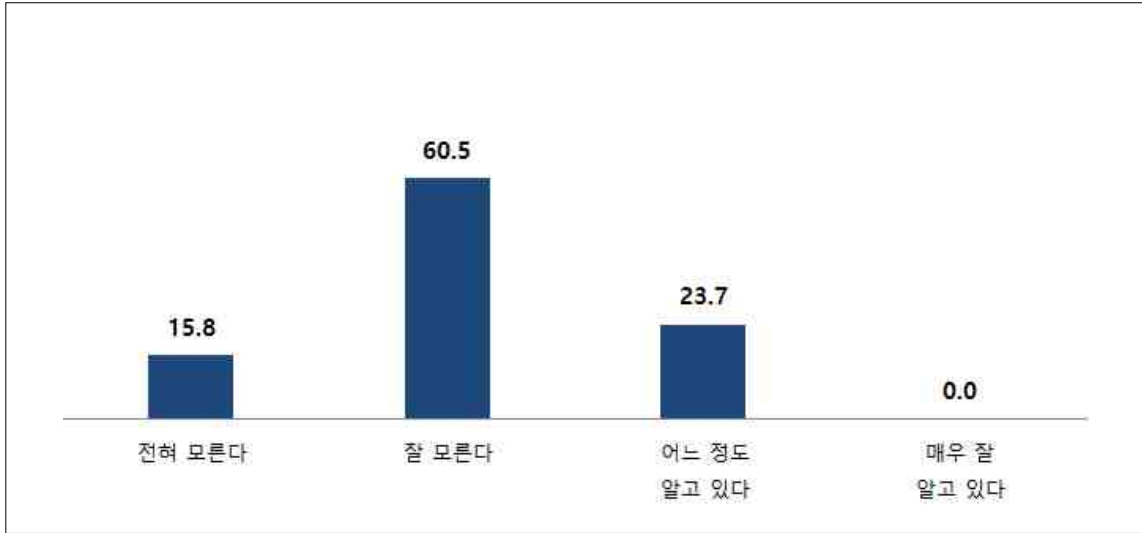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 바)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 인식 및 현황

- 과점주주인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세법규정에 대한 인지 수준을 파악한 결과 23.7%만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76.3%는 모른다고 응답함

[그림 V-7]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 인식도

(단위: 명)



자료: 설문조사

<표 V-47>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 인식도(벤처기업)

(단위: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종합		
					비인지	인지	
전체	(38)	15.8	60.5	23.7	76.3	23.7	
업종	1차 산업	(1)	0.0	100.0	0.0	100.0	0.0
	제조업	(20)	20.0	65.0	15.0	85.0	15.0
	서비스업	(17)	11.8	52.9	35.3	64.7	35.3
상시 종업원 수	10인 미만	(19)	15.8	47.4	36.8	63.2	36.8
	10~20인 미만	(6)	16.7	83.3	0.0	100.0	0.0
	20~50인 미만	(12)	16.7	66.7	16.7	83.3	16.7
	50인 이상	(1)	0.0	100.0	0.0	100.0	0.0
설립연도	2000년대 이전	(8)	37.5	62.5	0.0	100.0	0.0
	2000년대	(13)	7.7	76.9	15.4	84.6	15.4
	2010년대	(17)	11.8	47.1	41.2	58.8	41.2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0.0	100.0	0.0	100.0	0.0
	초기성장기	(9)	22.2	22.2	55.6	44.4	55.6
	고도성장기	(9)	11.1	66.7	22.2	77.8	22.2
	성숙기	(18)	16.7	77.8	5.6	94.4	5.6
	쇠퇴기	(1)	0.0	0.0	100.0	0.0	100.0

자료: 설문조사

- 과점주주인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를 적용 받기 위한 요건 완화에 대해 26.3%의 기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V-48>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요건 완화 필요성(벤처기업)

(단위: %)

구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전체		(38)	26.3	7.9	65.8
업종	1차 산업	(1)	100.0	0.0	0.0
	제조업	(20)	30.0	10.0	60.0
	서비스업	(17)	17.6	5.9	76.5
상시 종업원 수	10인 미만	(19)	36.8	5.3	57.9
	10~20인 미만	(6)	16.7	16.7	66.7
	20~50인 미만	(12)	8.3	8.3	83.3
	50인 이상	(1)	100.0	0.0	0.0
설립연도	2000년대 이전	(8)	25.0	0.0	75.0
	2000년대	(13)	30.8	7.7	61.5
	2010년대	(17)	23.5	11.8	64.7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0.0	0.0	100.0
	초기성장기	(9)	33.3	11.1	55.6
	고도성장기	(9)	33.3	0.0	66.7
	성숙기	(18)	22.2	11.1	66.7
	쇠퇴기	(1)	0.0	0.0	100.0

자료: 설문조사

- 과점주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가 폐지된다면, 신규 자금조달 전략 또는 주주의 지분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세법규정이 영향을 미칠지 질문한 결과 63.2%가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36.8%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표 V-49>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신규 자금조달 전략 및 주주 지분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벤처기업)

(단위: %)

구분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종합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다	
전체	(38)	10.5	26.3	57.9	5.3	36.8	63.2	
업종	1차 산업	(1)	0.0	0.0	100.0	0.0	0.0	100.0
	제조업	(20)	15.0	35.0	45.0	5.0	50.0	50.0
	서비스업	(17)	5.9	17.6	70.6	5.9	23.5	76.5
상시 종업원 수	10인 미만	(19)	5.3	15.8	73.7	5.3	21.1	78.9
	10~20인 미만	(6)	16.7	50.0	33.3	0.0	66.7	33.3
	20~50인 미만	(12)	16.7	33.3	41.7	8.3	50.0	50.0
	50인 이상	(1)	0.0	0.0	100.0	0.0	0.0	100.0
상장시장	상장	(0)	0.0	0.0	0.0	0.0	0.0	0.0
	비상장	(38)	10.5	26.3	57.9	5.3	36.8	63.2
설립연도	2000년대 이전	(8)	12.5	50.0	25.0	12.5	62.5	37.5
	2000년대	(13)	7.7	23.1	61.5	7.7	30.8	69.2
	2010년대	(17)	11.8	17.6	70.6	0.0	29.4	70.6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100.0	0.0	0.0	0.0	100.0	0.0
	초기성장기	(9)	0.0	11.1	77.8	11.1	11.1	88.9
	고도성장기	(9)	0.0	33.3	55.6	11.1	33.3	66.7
	성숙기	(18)	16.7	33.3	50.0	0.0	50.0	50.0
	쇠퇴기	(1)	0.0	0.0	100.0	0.0	0.0	100.0

자료: 설문조사

- 과점주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가 폐지된다면, 폐업 및 재창업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세법 규정이 영향을 미칠지 질문한 결과 63.2%가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36.8%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표 V-50〉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폐업 및 재창업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벤처기업)

(단위: %)

구분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종합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다	
전체	(38)	13.2	26.3	50.0	10.5	39.5	60.5	
업종	1차 산업	(1)	0.0	0.0	100.0	0.0	0.0	100.0
	제조업	(20)	15.0	40.0	40.0	5.0	55.0	45.0
	서비스업	(17)	11.8	11.8	58.8	17.6	23.5	76.5
상시 종업원 수	10인 미만	(19)	5.3	15.8	63.2	15.8	21.1	78.9
	10~20인 미만	(6)	16.7	33.3	50.0	0.0	50.0	50.0
	20~50인 미만	(12)	16.7	41.7	33.3	8.3	58.3	41.7
	50인 이상	(1)	100.0	0.0	0.0	0.0	100.0	0.0
상장시장	상장	(0)	0.0	0.0	0.0	0.0	0.0	0.0
	비상장	(38)	13.2	26.3	50.0	10.5	39.5	60.5
설립연도	2000년대 이전	(8)	12.5	37.5	50.0	0.0	50.0	50.0
	2000년대	(13)	15.4	38.5	30.8	15.4	53.8	46.2
	2010년대	(17)	11.8	11.8	64.7	11.8	23.5	76.5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100.0	0.0	0.0	0.0	100.0	0.0
	초기성장기	(9)	0.0	11.1	66.7	22.2	11.1	88.9
	고도성장기	(9)	11.1	33.3	44.4	11.1	44.4	55.6
	성숙기	(18)	16.7	33.3	44.4	5.6	50.0	50.0
	쇠퇴기	(1)	0.0	0.0	100.0	0.0	0.0	100.0

자료: 설문조사

### 3. 과점주주 벤처기업의 특성 및 효과성 분석

#### 가.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한 벤처기업의 특성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와 관련하여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실시<sup>22)</sup>하였음

22) 한국벤처투자(주)의 본부장(2명), 채납 및 법인세 업무담당 세무공무원(3명), 벤처기업 담당 세무사(3명)

- (세무공무원) 현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제도로 판단되며, 동 제도에 대한 특례 및 폐지를 논의하기 전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적절한 수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대표이사의 경우 기업의 자산을 본인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편임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가 없다면 채무의 우선변제순위에서 조세채무가 후순위가 될 수 있음
  - 다만, 벤처기업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며, 창업초창기 벤처기업의 경우 세무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무척 낮은 편으로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임
  
- (세무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존속은 필요하며, 지분율이 높은 대표이사의 경우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강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은 편임
  - 법인세 등의 조세채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고, 소규모 기업인 경우 회계 및 세무행정에 대한 투명성이 매우 낮은 편임
  -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벤처기업의 대표이사는 기술경력을 기반으로 창업한 경우가 많으므로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
  - 특히, 창업초창기 벤처기업의 경우는 수익창출이 낮고 「조특법」 제6조에 의해 법인세가 경감되는 편이므로 법인세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임. 정기적인 기장 및 세무업무를 위해서 세무대리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최소 창업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경우가 많은 편임
  - 벤처기업의 폐업은 관할세무서의 직권폐업이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벤처기업 스스로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관련 증빙자료 및 기장된 장부가 없는 경우가 많음
  
- (한국벤처투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법인의 다른 채권자와 달리 법인의 조세채무를 과점주주에게 전가한 것으로 법인의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에 맞지 않고 주식회사제도의 취지인 출자자는 출자금액을 한도로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원칙에도 맞지 않는 제도라고 판단됨

- 따라서 과점주주가 법인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면 다른 채권자와 같이 형법이나 민법상 조치로 채권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벤처기업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는 처음으로 인식하였고,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고지 시 벤처기업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에 대한 고지도 같이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 될 경우 국세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재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므로 성실 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동 제도를 통해 재창업의 걸림돌 중 일부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재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관련 투자금액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벤처기업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소규모 벤처기업의 폐업인 경우 정상적인 폐업신고보다는 일정기간 세무신고 누락에 따른 직권 폐업이 대다수일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소규모 벤처기업이 폐업되는 경우 외부기장료 미지급이나 급여 미지급에 따른 회계장부 기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창업자의 지분이 낮을 경우 계속해서 외부투자를 받아 성장을 해야 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외부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될 수는 있음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창업시 창업자의 지분율을 50% 이하로 낮춰 창업하는 경우 추후 외부투자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어 낮아지게 되고 그 결과 창업자가 일정 수준 이하의 지분율을 보유하게 되면 외부투자자는 경영상 안정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투자하기 쉽지 않게 됨
- 창업자 교육 등을 통해 법인자금과 대주주 개인자금을 동일시하는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대주주(과점주주)는 법인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민간 금융기관 같이 주기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국세 체납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나 외부위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단순히 지분율이 50%를 초과한다고 해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경우(전문경영인을 통해 경영을 하고 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는 임원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차 납세의무를 면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 벤처기업만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알기 쉽게 해설하고 풍부한 사례를 담고 있는 책자를 발간하거나 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벤처기업의 조세특례에 대해서만 세무 상담을 해주는 전용 창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나.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 효율성 분석

-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벤처기업의 특성은 앞서 살펴본 2019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추정된 특성과 거의 유사함
  - 창업자와 현 대표이사가 동일, 소규모 종업원 수 및 기업의 성장단계는 초기 성장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벤처 및 중소기업 대상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수준을 파악한 결과, 벤처기업은 사업단계의 조세지원제도 인지 비율이 62.0%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창업단계 조세지원제도(57.0%), 투자 및 자금조달 단계 조세지원제도(51.0%), 재무개선 및 구조 조세지원제도(36.0%) 순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정책지원자금, 세제지원 및 기타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파악한 결과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경험한 비율이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즉, 설문조사 대상기업들은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과점주주 기업을 대상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를 알고 있는지 파악한 결과, 벤처기업의 34.2%,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56.5%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과점주주인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세법 규정에 대한 인지수준을 파악한 결과 23.7%만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76.3%는 모른다고 응답함
  - 과점주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가 폐지된다면, 신규 자금조달 전략 또는 주주의 지분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세법규정이 영향을 미칠지 질문한 결과 63.2%가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36.8%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 즉, 벤처확인 후 벤처확인우대제도<sup>23)</sup>로 알려져 있는 「조특법」 제6조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나 일반적인 「국기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최근 도입된 「조특법」 제15조에 의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관찰됨
- 앞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 (정책대상자) 동 특례제도의 정책대상자가 되는 벤처기업은 창업초창기의 기술기반의 소규모 기업으로 창업자가 대표이사과 동일하며, 법인세 부담이 매우 낮음
- 연구개발 비중이 높고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은 창업초창기 이후에는 외부투자자의 유입이 높게 되므로 대표이사가 과점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편임
  - 대표이사가 엔지니어인 경우가 많고, 창업초창기는 수익창출이 낮고 법인세 감면액이 많아서 회계 및 세무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장부 및 증빙자료의 비치와 어려움
- (제2차 납세의무 비인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직권폐업에 의한 제2차 납부통지서를 받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증빙자료 및 장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는 편임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5% 이상을 초과 및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증빙자료 및 기장처리가 안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음

23) 벤처인 웹사이트에서 벤처확인우대제도로 소개되고 있으며, Q&A의 유형에서도 잦은 질문에 의한 답변이 공개되어 있음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법인세 세목) 동 특례제도는 법인세 세목에 한해서 적용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벤처기업은 법인세 감면규정이 있고, 창업초창기에는 수익이 미미하므로 법인세가 발생할 여지가 적음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의 정책 목적은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출구전략으로 활용되어 재창업된 벤처기업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최근에 도입된 제도이므로 벤처기업의 체납금액 발생,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제2차 납세의무의 면제, 재창업 순으로 정책 목표 달성을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
  - 또한, 동 특례제도가 도입된 이후 벤처기업 출자자의 면제 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정책적 활용도가 낮은 동 과세특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용요건 완화가 필요함
- (법인세 세목) 창업초창기의 벤처기업은 이익창출이 미미하고, 이익이 창출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법」 제6조에 의해 법인세 50~75%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 체납액 면제에 대한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음
  - 현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창업초창기의 벤처기업이 체납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일 확률이 높음
  - 동 특례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동 특례제도가 적용되는 체납세목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간접세 및 원천세는 엄밀히 기업부담분이 아니므로 특례를 적용하는 세목을 확대하는 것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

- (연구개발비 비중요건) 벤처기업 인증 시 기업의 기술력 및 성장성에 대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연구개발비 별도 요건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벤처기업 인증은 벤처유형에 따라 각 기준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한 예로 연구개발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연구개발비 규모, 사업성 평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창업초창기 벤처기업의 폐업은 일정기간 세무신고 누락시 직권폐업이 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고지되는 것이며, 과점주주 입장에서 장부 및 증빙자료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기 때문임
  
- (소기업 요건) 소기업 요건을 삭제하면 창업초창기 벤처기업 외에도 동 특례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폐업 직전 창업초창기 벤처기업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세무행정처리가 미흡하여 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서식작성 및 증빙자료를 구비하기 어렵기 때문임
  
- (세무행정)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고지 시 동 특례제도에 대한 고지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기법」 제39조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동 특례제도에 대한 인식 역시 매우 부족한 편임
  - 상대적으로 「조특법」 제6조에 의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는 벤처확인우대제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편임



## VI. 결론





## VI. 결론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세 등의 징수 확보를 위하여 유용하고 편리한 제도이나, 본래의 납세의무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제3자에게 납부책임을 확장시키므로 사법상의 거래안전을 해치고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제2차 납세의무가 신규 자금조달 전략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동 특례제도의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면서 정책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가 신규 자금조달 전략 또는 주주의 지분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59.7%)됨
  -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기 전, 동 특례제도의 적용대상이 선량한 관리의무를 위반 및 해태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형법 및 민법상 제도가 완비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법인에 대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미흡한 편으로 판단됨<sup>24)</sup>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인은 변제우선순위 중 국세 등의 조세채무 변제순위를 후순위로 선택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함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면제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전 기업이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다가 불가피하게 폐업한 것에 대한 사회적 신뢰 형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의 악의적인 도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현장실사를 통한 지표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24) 국세공무원, 세무사 및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결과, 최대주주 등이 법인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동일시하는 인식이 아직까지 팽배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미국과 중국의 기업인들은 평균 2.8회의 실패경험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창업인들은 평균 1.3회의 실패경험을 보유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는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큰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실패비용을 줄이고, 재도전 기회 확대 등의 정책 목적을 아직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좀 더 확대하여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최근에 도입된 제도이므로 벤처기업의 체납금액 발생,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제2차 납세의무의 면제, 재창업 순으로 정책적 목표 달성을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
  - 또한, 동 특례제도가 도입된 이후 벤처기업 출자자의 면제 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정책대상자는 창업 초창기의 벤처기업으로 창업자가 단독으로 창업하고 기술평가 보증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며, 첨단제조업의 소규모 기업에 해당
  - 창업초기 벤처기업 생존율은 78.4%(5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현 제도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정책홍보 및 안내 등 적극적 세무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일반적으로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낮고, 법인세 및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로 체납되는 세목은 부가세 및 원천세 등일 확률이 높음
  - 이들 기업의 경우, 세무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소기업의 경우, 직권 폐업이 대다수이며, 체납독촉 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안내가 고지될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동 특례제도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고지 시 동 특례제도를 같이 고지하는 행정안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 기업을 대상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를 알고 있는지 파악한 결과, 벤처기업의 34.2%,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56.5%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과점주주인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세법 규정에 대한 인지수준을 파악한 결과 23.7%만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76.3%는 모른다고 응답함
  - 과점주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가 폐지된다면, 신규 자금조달 전략 또는 주주의 지분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세법규정이 영향을 미칠지 질문한 결과 63.2%가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36.8%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 즉, 벤처확인 후 벤처확인우대제도<sup>25)</sup>로 알려져 있는 「조특법」 제6조에 대한 인지는 높은 편이나 일반적인 「국기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최근 도입된 「조특법」 제15조에 의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인지는 매우 낮은 것으로 관찰됨
- 앞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 (정책대상자) 동 특례제도의 정책대상자가 되는 벤처기업은 창업초창기의 기술기반의 소규모 기업으로 창업자가 대표이사과 동일하며, 법인세 부담이 매우 낮음
  - (제2차 납세의무 비인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직권폐업에 의한 제2차 납부통지서를 받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증빙자료 및 장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는 편임
  - (법인세 세목) 동 특례제도는 법인세 세목에 한해서 적용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벤처기업은 법인세 감면규정이 있고, 창업초창기에는 수익이 미미하므로 법인세가 발생할 여지가 적음
- 정책적 활용도가 낮은 동 과세특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용요건 완화가 필요함
- 법인세 세목: 창업초창기의 벤처기업은 이익창출이 미미하고 이익이 창출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특법」 제6조에 의해 법인세 50~75%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 체납액 면제에 대한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음

25) 벤처인 웹사이트에서 벤처확인우대제도로 소개되고 있으며, Q&A의 유형에서도 잦은 질문에 의한 답변이 공개되어 있음

- 현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창업초창기의 벤처기업이 체납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일 확률이 높음
  - 동 특례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동 특례제도가 적용되는 체납세목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간접세 및 원천세는 엄밀히 기업부담분이 아니므로 특례를 적용하는 세목을 확대하는 것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
- 연구개발비 비중요건: 벤처기업 인증 시 기업의 기술력 및 성장성에 대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연구개발비 별도 요건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벤처기업 인증은 벤처유형에 따라 각 기준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한 예로 연구개발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연구개발비 규모, 사업성 평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창업초창기 벤처기업의 폐업은 일정기간 세무신고 누락 시 직권폐업이 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고지되는 것이며, 과점주주 입장에서 장부 및 증빙자료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기 때문임
- 소기업 요건: 소기업 요건을 삭제하면 창업초창기 벤처기업 외에도 동 특례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폐업 직전 창업초창기 벤처기업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세무행정처리가 미흡하여 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서식작성 및 증빙자료를 구비하기 어렵기 때문임
- 세무행정: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고지 시 동 특례제도에 대한 고지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기법」 제39조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동 특례제도에 대한 인식 역시 매우 부족한 편임
  - 상대적으로 「조특법」 제6조에 의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는 벤처확인우대제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편임
- (적용한도액) 2017~2019년 징수연도기간 동안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 원납세자별 평균 81.86백만~86.04백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현 특례제도의 한도(1인당 2억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납세자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출자자는 평균 1.06~1.21명(개)이므로 납세자별 지정금액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납세자별 과점주주 지정금액 최대금액은 2017년 739.5억원임
- (타 제도와 중복성) 실패기업의 재창업 재정지원으로 ‘벤처패자부활제(2005년)’가 최초 도입된 이후 중소기업벤처부를 중심으로 매우 적극적인 지원정책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 및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음. 다만, 담당기관이 매우 다양하므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운영은 어려운 편임
-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자금지원(보조금), 자금투자, 자금융자, 보증지원, 교육 및 상담, 컨설팅, 멘토링, 자산매매, 사무공간 제공, 법인신용카드 발급, 자동차 리스, 클라우드 펀딩 및 성실경영평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세제지원으로는 국세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및 법인세 감면 등이 있음
- 더불어 동 과세특례제도는 벤처기업의 출구전략으로, 이는 재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재창업 정책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재창업에 대한 자금지원, 자금투자, 자금융자, 보증지원 및 세제지원은 실패기업의 현금흐름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이므로 이에 대한 중복혜택 및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로 인하여 과점주주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키므로 자금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는 자금지원, 자금투자, 자금융자 및 보증지원과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함
- (쉬운 재도전 환경 조성) 다각적인 재도전 저해요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력의 창업 기피와 재도전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하기 때문에 (재)창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는 필수적
- 성실실패에도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1달 이내 검증, 경영 이외 이중처벌 금지 등)하고 재창업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자 공제제도(압류가 불가하도록 공제금지급권리의 양도·압류·담보제공 불가 명시) 운영
    - 성실실패: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은 기업 중 동일업종 평균 매출액 및 사업소득 임금근로자의 중위소득 미달 등 주요 지표로 판단

## 참고문헌

- 김선화, 『재도전을 위한 사회적기업 활용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19.
- 김재진·문예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김재진·홍범교,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김정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주요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조세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2014.
- 김희선, 『벤처출신기업의 성과분석』, 중소기업연구원, 2019.
- 이철송, 『상법강의』, 박영사, 2012.
- 전병욱, 「중소기업 실패기업인의 제2차 납세의무 완화방안 연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연구』, 2019.
- 중소기업벤처부,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각 연도.
- \_\_\_\_\_,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제도』, 2019.
- \_\_\_\_\_, 『창업기업실태조사』, 2019.
- 창조경제연구회, 「8차 포럼보고서 -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전략」, 2014. 5.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한국노동연구원, 「혁신형 중소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노동브리프』 제87호, 2019. 5.
- 황남석,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설」, 『삼일아이닷컴』, 검색일자: 2020. 4. 5.
- EKMEKJIAN, Elizabeth, GRITSCH, Martin, and SNYDER, Tricia Coxwell. TAXING OPTIONS: THE IMPACT OF TAX-FAVORED TREATMENT ON EMPLOYEE COMPENSATION. In: *Proceedings. Annual Conference on Taxation and Minute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Tax Association*. National Tax Association, 2001. pp. 123~129.
- WALKER, David I, "The non-option: understanding the dearth of discounted employee stock options," *BUL Rev.*, 2009, 89: 1505.

Internal Revenue Service(I.R.S.), Notice: Changes To Incentive Stock Option Requirements By Section 321 Of The Tax Reform Act Of 1986, Notice 87-49, 1987-2 C.B. 35, 1987 WL 420154(IRS NOT), 1987.

BICKLEY, James M. *Employee stock options: tax treatment and tax issues*. 2012.

Mancof, Neal A. and David M. Weiner, *Nonqualified Deferred Compensation Arrangements* (2014 ed.), 2014.

#### <자료>

기술보증기금, <https://www.kibo.or.kr>

벤처인, [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go\\_page.jsp](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go_page.jsp)

중소기업벤처부 통계DB, ([http://211.253.148.159:8083/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N\\_A10255&conn\\_path=I2](http://211.253.148.159:8083/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N_A10255&conn_path=I2)), 검색일자: 2020. 6. 1.

재도전종합지원센터, <https://rechallenge.or.kr/>

Westlaw, <https://content.next.westlaw.com>

『서울경제』,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재도전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https://sedaily.com/NewsView/1YZ2OEXUQKh>, 2020. 7. 26.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법」, 「국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부 록





## <부 록 설문지>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임의심층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항은 20개 내외이며, 소요시간은 약 10분입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있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 조사담당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조사수행기관 : ㈜리서치앤리서치

### 응답회사 기본 정보

기업명		업종 <small>(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별첨자료 확인</small>	
사업자등록번호 <small>(10자리)</small>	- - - - -	상시종업원 수 <small>(대표자 제외)</small>	명
상장시장	①코스피 ②코스닥 ③코넥스 ④비상장	설립연도	년
		상장연도	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에 해당여부			①예      ②아니요
기업 성장단계*	①창업기      ②초기성장기      ③고도성장기      ④성숙기      ⑤쇠퇴기		

<참고> 기업 성장단계 정의

- ① (창업기) 회사를 창업하고, 제품(서비스)을 개발하는 단계
- ② (초기성장기) 신규 제품(서비스)이 출시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단계
- ③ (고도성장기) 후속 신규제품이 출하되어 제품 및 시장이 다각화 되고 매출이 증폭되는 단계
- ④ (성숙기) 경쟁이 심화되고, 매출 및 시장이 포화되어 성장이 둔화된 단계
- ⑤ (쇠퇴기) 매출이 급락하고 기업활동이 정체되거나 철수가 고려되는 단계

## A. 창업가 특성

A1. 현 대표이사는 귀사의 창업자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A2. 창업자 성별		① 남      ② 여
A3. 귀사 창업 당시 창업주의 연령		① 20대(29세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A4. 창업주의 창업 당시 최종학력		① 박사 ⇨A4-2      ② 석사      ⇨A4-2 ③ 대졸 ⇨A4-1      ④ 전문학사 ⇨A4-1 ⑤ 고졸 ⇨A5          ⑥ 중졸 이하 ⇨A5
A4-1. 창업주의 창업 당시 전공 (대졸·전문학사)		① 공학(엔지니어)    ② 자연과학    ③ 경영·경제학    ④ 인문사회학 ⑤ 기타(_____)
A4-2. 창업주의 창업 당시 전공 (석사 이상 응답) *복수응답 가능		① 공학(엔지니어)    ② 자연과학    ③ 경영·경제학    ④ 인문사회학 ⑤ 기타(_____)
A5. 창업주의 창업 이전 근무지		① 교수    ② 연구소 (공공 및 민간)      ③ 일반기업 ④ 정부 및 산하단체 ⑤ 기타(_____)      ⑥ 이전 근무지 없음
A6. 창업방식	A6-1. 창업 유형	① 대기업 등 타 기업의 분사 또는 계열사 형식으로 창업 ② 국가연구소, 대학교 등에서 창업보육(BI) 과정을 거쳐 창업 ③ 위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창업자가 독자적으로 창업
	A6-2. 단독/공동	① 창업자 단독창업 ⇨A7 ② 공동 및 팀 창업(2-4명과 역할분담 창업) ⇨A6-3
	A6-3. 창업 멤버수	공동/팀 창업의 경우, 창업 시 창업자를 포함하여 참여 멤버 수는? (_____) 명
	A6-4. 주요 역할	창업자 외 공동창업자의 주요 역할은? (*복수응답 가능) ① 기술개발    ② 영업·마케팅    ③ 관리    ④ 재무 ⑤ 기타 (_____)
A7. 창업 당시 귀사의 목표시장은?		① 국내      ② 해외      ③ 국내 + 해외
A7-1. 현재 귀사의 목표시장은?		① 국내      ② 해외      ③ 국내 + 해외
A8. 창업당시 창업자의 현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실무경험 년수		_____년 (*경험 없다면 "0"으로 표기)
A9. 귀사의 창업주는 과거 창업 경험이 있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B1
A9-1. 과거 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 결과 및 횟수는 어떻습니까?		A9-1-1. 성공경험 (_____)회
		A9-1-2. 실패경험 (_____)회

## B. 지분구조의 특성

B1. 귀사의 기업 경영체제는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 ① 소유주가 대부분의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경영활동을 직접 관장하는 소유경영체제
- ② 전문경영인이 회사의 경영을 맡고 있지만, 권한이양이 미약한 소유주 중심의 경영체제
- ③ 전문경영인에게 회사 경영 권한이 대폭 이양되었지만, 임원인사, 신규투자 등 주요 경영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여전히 소유주가 지니는 체제
- ④ 소유와 경영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소유주의 영향에서 완전히 독립된 전문경영인 체제

B2. 현재 귀사의 주주별 지분율은 각각 몇 %입니까?

구분	창업자	창업자가 아닌 대표자	창업자의 가족이나 친지	대표자의 가족이나 친지	일반 임직원	벤처 캐피탈 및 기관 투자자	타 기업	개인 투자자	기타	합계
보유지분 비율	%	%	%	%	%	%	%	%	%	100%

B3. 귀사는 최대주주가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B4. 귀사는 최대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50%를 초과**(이하 과점주주)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B4-1)      ② 아니다

B4-1. 귀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의 합이 50% 초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어려움      ② 기업의 의사결정      ③ 장기적인 기업목표 수립
- ④ 경영권 방어      ⑤ 기타( )

B5. 귀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주주들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당되는 유형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중복 답변 가능)

구분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법인 주주	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계열사	①	①	
	②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계열사	②	②	
	기업 규모	③ 대기업	③	③
		④ 중견 및 중소기업	④	④
	⑤ 상장기업(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	⑤	⑤	
	⑥ 지주회사	⑥	⑥	
	⑦ 영리법인	⑦	⑦	
	공공부문	⑧ 정부	⑧	⑧
		⑨ 공공부문(공기업, 정부투자, 출자, 출연기업 등)	⑨	⑨
	⑩ 외국법인	⑩	⑩	
	⑪ 금융기관	⑪	⑪	
개인 주주	⑫ 귀사의 대표이사	⑫	⑫	
	⑬ 귀사의 대표이사 외 임원	⑬	⑬	
	⑭ 귀사의 직원	⑭	⑭	
	⑮ 그 외	⑮	⑮	

## C. 재무구조

C1. 귀사의 재무상태표에 대한 기초 질문입니다.

구분	2018년도 12월말 기준	2019년도 12월말 기준
C1-1. 자산 총계	(자동계산)	(자동계산)
C1-2. 부채 총계	백만원	백만원
C1-3. 자본 총계	백만원	백만원

- \* 정확한 수치를 입력하였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응답 단위는 (백만원)입니다.
- \* 해당연도 창업 이전인 경우 기재하지 마십시오.

C2. 귀사의 손익계산서에 대한 기초 질문입니다.

구분	2018년도 12월말 기준	2019년도 12월말 기준
C2-1.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C2-2. 영업이익	백만원	백만원
C2-3. 금융비용(이자비용)	백만원	백만원
C2-4. 당기순이익	백만원	백만원
C2-5. 법인세부담액	백만원	백만원

- \* 정확한 수치를 입력하였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응답 단위는 (백만원)입니다.
- \* 해당연도 창업 이전인 경우 기재하지 마십시오.
- \* 응답하신 내용은 전체적인 통계 산출 자료로만 활용되며, 개별 응답 내용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C3. 귀사는 2019년에 정부의 정책지원(출연, 융자, 보증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C3-1      ② 없다 ⇨ C4

C3-1. 귀사에서 아래의 정부 정책지원자금 혜택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2019년도 경험 여부
C3-1-1. R&D자금(출연금)	① 있다      ② 없다
C3-1-2. 융자(정책자금)	① 있다      ② 없다
C3-1-3. 보증서 지원(보증서발급 대출)	① 있다      ② 없다

C4. 귀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또는 선호)하는 신규 자금조달 방법 및 비율은 무엇입니까?

구분	IPO (기업공개/상장)	캐피탈/ 엔젤투자	회사채 발행	정부정책지원금 (R&D, 융자, 보증서 지원)	은행 등 일반금융	기타	합계
신규 자금조달 비율	%	%	%	%	%	%	100%

## D. 기업의 경쟁력 및 성장성

D1. 귀사는 자체 연구개발 관련 기술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 연구소로 시작한 벤처기업은 '①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에 해당합니다.)

- ①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② 부설연구소는 없지만,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 ③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는 없지만, 연구개발 인력 보유
- ④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 연구개발 인력이 없음

D2. 귀사의 제품 및 서비스 구조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하나의 대표 제품 또는 서비스에만 집중
- ② 2~3개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주력
- ③ 4개 이상 복수의 제품 및 서비스 다각화 추구 (정확한 개수는? \_\_\_\_\_ 개)

D3. 귀사의 주력제품이나 서비스의 기술력 수준은 국내 및 세계 최고수준 기업의 기술력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국내 기술력 비교	국내 유일기술	국내 최고수준과 동일(거의 100%수준)	약간 미흡 (80% ~ 99%수준)	미흡 (60% ~ 80%수준)	경쟁 열세 (60% 이하수준)
	①	②	③	④	⑤
세계 기술력 비교	세계 유일기술	세계 최고수준과 동일(거의 100%수준)	약간 미흡 (80% ~ 99%수준)	미흡 (60% ~ 80%수준)	경쟁 열세 (60% 이하수준)
	①	②	③	④	⑤

D4. 귀사가 가진 경쟁력은 동종업계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과 비교 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항 목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D4-1. 기술 경쟁력	①	②	③	④	⑤
D4-2. 가격 경쟁력	①	②	③	④	⑤
D4-3. 디자인* 경쟁력	①	②	③	④	⑤
D4-4. 품질 경쟁력	①	②	③	④	⑤
D4-5. 조직관리 경쟁력	①	②	③	④	⑤
D4-6 마케팅 경쟁력	①	②	③	④	⑤

\* '디자인 경쟁력'에서의 '디자인'은 유형화된 제품뿐만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 팜플렛, 광고 등 고객에게 전달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광의의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D5. 귀사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성은 어떻습니까?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 E.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정책 인식 및 현황

E1. 귀사는 벤처투자기업에 대한 다음의 정책지원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구분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E1-1. 창업지원제도 (교수 및 연구원창업, 산업재산권 출자)	①	②	③	④
E1-2. 금융지원제도 (코스닥 상장, 정책자금, 신용보증)	①	②	③	④
E1-3. 입지지원제도 (실험실 및 공장, 도시형공장 설치, 벤처기업 전용 단지 내 건축, 과밀억제권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면제)	①	②	③	④
E1-4. 기타 지원제도 (특허 우선 심사, 기술임치 수수료 감면, 마케팅 광고 감면, 주식교환 등)	①	②	③	④

E2. 귀사는 벤처기업에 대한 다음의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구분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E2-1. 창업단계 (5년간 법인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창업자금 저율과세 등)	①	②	③	④
E2-2. 투자 및 자금조달단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시설투자세액 공제, 출자투자금액의 소득공제 등)	①	②	③	④
E2-3. 사업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설비투자세액공제, 기술이전 등에 대한 공제감면, 접대비 한도액 증액, 최저한세 우대 등)	①	②	③	④
E2-4. 재무개선 및 구조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사업전환 양도차익 및 법인세 감면,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②	③	④

E3. 귀사는 아래의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지원 받은 모든 정책지원을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경험 여부	
정책지원자금	E3-1. R&D자금(출연금)	① 지원 받음	② 지원 안 받음
	E3-2. 융자(정책자금)	① 지원 받음	② 지원 안 받음
	E3-3. 보증서 지원(보증서발급 대출)	① 지원 받음	② 지원 안 받음
세제지원	E3-4.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① 지원 받음	② 지원 안 받음
	E3-5.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① 지원 받음	② 지원 안 받음
기타	E3-6. 교수 및 연구원 창업, 산업재산권 출자	① 지원 받음	② 지원 안 받음
	E3-7. 입지지원(실험실 및 공장, 도시형 공장 등)	① 지원 받음	② 지원 안 받음
	E3-8. 기타(특허심사, 기술임치, 마케팅 등)	① 지원 받음	② 지원 안 받음

E4. 귀사는 일반적인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세법규정을 고려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합니까?

- ①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② 약간 고려한다    ③ 매우 많이 고려한다    ④ 잘 모르겠다

※ (B4문항에서 ①그렇다 고 응답한 경우만) 귀사의 최대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50%를 초과하는(과점주주) 기업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5. 귀사는 국제기본법 제39조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세법규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설명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원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세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법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 출자자)에게 원래 납세의무자(법인)의 납세의무를 대신 부담시키는 제도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E6. 귀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세법규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설명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2018.01.01. ~ 2020.12.31. 중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출자자 1명당 최대 2억 원까지 면제해 주는 제도. 단, 정책 대상자는 벤처기업 출자자로 1)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이어야 하며, 2)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E7. 귀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기업입니까?

- ① 그렇다 ☞E8      ② 아니다 ☞E10      ③ 잘 모르겠다 ☞E10

E8.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로 인해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대주주는 귀사에 기존 투자금액보다 더 많은 투자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습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E9. 만일 귀사에서 출구전략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도를 활용하시겠습니까?

- ①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② 검토는 해볼 것이다      ③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E10.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E11.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가 폐지된다면, 귀사의 신규 자금조달전략 또는 주주의 지분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세법규정(국제기본법 제39조)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약간 중요하지 않다      ③ 약간 중요하다      ④ 매우 중요하다

E12.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가 폐지된다면, 귀사의 폐업 및 재창업관련 의사결정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세법규정(국제기본법 제39조)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약간 중요하지 않다      ③ 약간 중요하다      ④ 매우 중요하다

E1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규정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랜 시간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정책 인식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정책 인식 및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항은 20개 내외이며, 소요시간은 약 10분입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있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 조사담당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조사수행기관 : ㈜리서치앤리서치

응답회사 기본 정보

기업명		업종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별첨자료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 - - - -	상시종업원 수 (대표자 제외)	명
상장시장 ①코스피 ②코스닥 ③코넥스 ④비상장		설립연도	년
		상장연도	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에 해당여부			①예      ②아니요
기업 성장단계*	①창업기      ②초기성장기      ③고도성장기      ④성숙기      ⑤쇠퇴기		

<참고> 기업 성장단계 정의

- ① (창업기) 회사를 창업하고, 제품(서비스)을 개발하는 단계
- ② (초기성장기) 신규 제품(서비스)이 출시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단계
- ③ (고도성장기) 후속 신규제품이 출하되어 제품 및 시장이 다각화 되고 매출이 증폭되는 단계
- ④ (성숙기) 경쟁이 심화되고, 매출 및 시장이 포화되어 성장이 둔화된 단계
- ⑤ (쇠퇴기) 매출이 급락하고 기업활동이 정체되거나 철수가 고려되는 단계

## A. 창업가 특성

A1. 현 대표이사는 귀사의 창업자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A2. 창업자 성별		① 남      ② 여
A3. 귀사 창업 당시 창업주의 연령		① 20대(29세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A4. 창업주의 창업 당시 최종학력		① 박사 ⇨A4-2      ② 석사      ⇨A4-2 ③ 대졸 ⇨A4-1      ④ 전문학사 ⇨A4-1 ⑤ 고졸 ⇨A5          ⑥ 중졸 이하 ⇨A5
A4-1. 창업주의 창업 당시 전공 (대졸 전문학사)		① 공학(엔지니어)    ② 자연과학    ③ 경영·경제학    ④ 인문사회학 ⑤ 기타(_____)
A4-2. 창업주의 창업 당시 전공 (석사 이상 응답) *복수응답 가능		① 공학(엔지니어)    ② 자연과학    ③ 경영·경제학    ④ 인문사회학 ⑤ 기타(_____)
A5. 창업주의 창업 이전 근무지		① 교수      ② 연구소      ③ 기업      ④ 정부 및 산하단체 ⑤ 기타(_____)      ⑥ 이전 근무지 없음
A6. 창업방식	A6-1. 창업 유형	① 대기업 등 타 기업의 분사 또는 계열사 형식으로 창업 ② 국가연구소, 대학교 등에서 창업보육(BI) 과정을 거쳐 창업 ③ 위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창업자가 독자적으로 창업
	A6-2. 단독/공동	① 창업자 단독창업 ⇨A7 ② 공동 및 팀 창업(2-4명과 역할분담 창업) ⇨A6-3
	A6-3. 창업 멤버수	공동/팀 창업의 경우, 창업 시 창업자를 포함하여 참여 멤버 수는? (_____) 명
	A6-4. 주요 역할	창업자 외 공동창업자의 주요 역할은? (*복수응답 가능) ① 기술개발    ② 영업·마케팅    ③ 관리    ④ 재무 ⑤ 기타 (_____)
A7. 창업 당시 귀사의 목표시장은?		① 국내      ② 해외      ③ 국내 + 해외
A7-1. 현재 귀사의 목표시장은?		① 국내      ② 해외      ③ 국내 + 해외
A8. 창업당시 창업자의 현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실무경험 년수		_____년 (*경험 없다면 "0"으로 표기)
A9. 귀사의 창업주는 과거 창업 경험이 있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B1
A9-1. 과거 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 결과 및 횟수는 어떻습니까?		A9-1-1. 성공경험 (_____)회
		A9-1-2. 실패경험 (_____)회



B5. 귀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주주들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당되는 유형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중복 답변 가능)

구분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법인 주주	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계열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②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계열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업 규모	③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④ 중견 및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⑤ 상장기업(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⑥ 지주회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⑦ 영리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공부문	⑧ 정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⑨ 공공부문(공기업, 정부투자, 출자, 출연기업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⑩ 외국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⑪ 금융기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인 주주	⑫ 귀사의 대표이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⑬ 귀사의 대표이사 외 임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⑭ 귀사의 직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⑮ 그 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C. 재무구조

C1. 귀사의 재무상태표에 대한 기초 질문입니다.

구분	2018년도 12월말 기준	2019년도 12월말 기준
C1-1. 자산 총계	(자동계산)	(자동계산)
C1-2. 부채 총계	백만원	백만원
C1-3. 자본 총계	백만원	백만원

- \* 정확한 수치를 입력하였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응답 단위는 (백만원)입니다.
- \* 해당년도 창업 이전인 경우 기재하지 마십시오.

C2. 귀사의 손익계산서에 대한 기초 질문입니다.

구분	2018년도 12월말 기준	2019년도 12월말 기준
C2-1.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C2-2. 영업이익	백만원	백만원
C2-3. 금융비용(이자비용)	백만원	백만원
C2-4. 당기순이익	백만원	백만원
C2-5. 법인세부담액	백만원	백만원

- \* 정확한 수치를 입력하였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응답 단위는 (백만원)입니다.
- \* 해당년도 창업 이전인 경우 기재하지 마십시오.
- \* 응답하신 내용은 전체적인 통계 산출 자료로만 활용되며, 개별 응답 내용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C3. 귀사는 2019년에 정부의 정책지원(출연, 융자, 보증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C3-1      ② 없다 ☞ C4

C3-1. 귀사에서 아래의 정부 정책지원자금 혜택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2019년도 경험 여부	
C3-1-1. R&D자금(출연금)	① 있다	② 없다
C3-1-2. 융자(정책자금)	① 있다	② 없다
C3-1-3. 보증서 지원(보증서발급 대출)	① 있다	② 없다

C4. 귀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또는 선호)하는 신규 자금조달 방법 및 비율은 무엇입니까?

구분	IPO (기업공개/상장)	캐피탈/ 엔젤투자	회사채 발행	정부정책지원금 (R&D, 융자, 보증서 지원)	은행 등 일반금융	기타	합계
신규 자금조달 비율	%	%	%	%	%	%	100%

## D. 기업의 경쟁력 및 성장성

D1. 귀사는 자체 연구개발 관련 기술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①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 부설연구소는 없지만,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③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는 없지만, 연구개발 인력 보유  
 ④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 연구개발 인력이 없음

D2. 귀사의 제품 및 서비스 구조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하나의 대표 제품 또는 서비스에만 집중  
 ② 2-3개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주력  
 ③ 4개 이상 복수의 제품 및 서비스 다각화 추구 (정확한 개수는? \_\_\_\_\_ 개)

D3. 귀사의 주력제품이나 서비스의 기술력 수준은 국내 및 세계 최고수준 기업의 기술력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국내 기술력 비교	국내 유일기술	국내 최고수준과 동일(거의 100%수준)	약간 미흡 (80% ~ 99%수준)	미흡 (60% ~ 80%수준)	경쟁 열세 (60% 이하수준)
	①	②	③	④	⑤
세계 기술력 비교	세계 유일기술	세계 최고수준과 동일(거의 100%수준)	약간 미흡 (80% ~ 99%수준)	미흡 (60% ~ 80%수준)	경쟁 열세 (60% 이하수준)
	①	②	③	④	⑤

D4. 귀사가 가진 경쟁력은 동종업계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과 비교 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항 목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D4-1. 기술 경쟁력	①	②	③	④	⑤
D4-2. 가격 경쟁력	①	②	③	④	⑤
D4-3. 디자인* 경쟁력	①	②	③	④	⑤
D4-4. 품질 경쟁력	①	②	③	④	⑤
D4-5 조직관리 경쟁력	①	②	③	④	⑤
D4-6 마케팅 경쟁력	①	②	③	④	⑤

\* '디자인 경쟁력'에서의 '디자인'은 유형화된 제품뿐만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 팸플렛, 광고 등 고객에게 전달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광의의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D5. 귀사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성은 어떻습니까?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 E.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정책 인식 및 현황

E1. 귀사는 벤처기업에 대한 다음의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구분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E1-1. 창업단계 (5년간 법인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창업자금 저율과세 등)	①	②	③	④
E1-2. 투자 및 자금조달단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시설투자세액 공제, 출자투자금액의 소득공제 등)	①	②	③	④
E1-3. 사업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설비투자세액공제, 기술이전 등에 대한 공제감면, 접대비 한도액 증액, 최저한세 우대 등)	①	②	③	④
E1-4. 재무개선 및 구조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사업전환 양도차익 및 법인세 감면,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②	③	④

E2. 귀사는 일반적인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업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고려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합니까?

- ①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② 약간 고려한다    ③ 매우 많이 고려한다    ④ 잘 모르겠다

※ (B4문항에서 ①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만) 귀사의 최대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족이  
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50%를 초과하는(과점주주) 기업에 해당한다  
면, 아래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3. 귀사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세법규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설명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원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세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법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무한책임  
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 출자자)에게 원래 납세의무자(법인)의 납세의무를 대신 부담시키는 제도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E4. 귀사의 신규 자금조달전략 또는 주주의 지분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세법규정  
(국세기본법 제39조)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약간 중요하다      ④ 매우 중요하다

E5. 귀사의 폐업 및 재창업 관련 의사결정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세법규정(국세기본법 제39조)이 중요한 영  
향을 미칩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약간 중요하다      ④ 매우 중요하다

E6.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이 기업의 경영전략 및 출구전략을 방해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      ② 별로 방해하지 않는다      ③ 어느 정도 방해한다      ④ 매우 방해한다

E7.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된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대주주는 귀사에 기존 투자  
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E8.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관해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랜 시간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